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57-000019-14

의정활동보고서

제243회 제1차 정례회(2010. 10. 12 ~ 10.2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원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일부 지역에 비피해가 많았지만 우리 지역은 별다른 피해 없이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7월 출범한 제9대 도의회가 제242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해서 독도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그리고 또 비회기 중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일본국 방위백서 규탄성명, 지역주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3년 연속 의정비 동결 등을 자율 결정하면서 가슴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3백만 도민의 현명한 선택에 따라서 선출된 도의원으로서 소명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발 빠른 행보를 통해서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는 등 동반자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이번 정례회는 실질적으로 제9대 도의회 의정활동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회기로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0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더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국민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하나의 국민정신 운동으로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다 한다는 차원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인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孝

차 례

I. 개 황	5
II. 의사일정	7
III. 의안처리	16
IV. 민원처리	18
V. 본회의 보고사항	19
VI. 5분 자유 발언	26
<input type="checkbox"/> 장세헌 의원(1차 본회의)	26
<input type="checkbox"/> 홍광중 의원(1차 본회의)	29
<input type="checkbox"/> 강영석 의원(1차 본회의)	34
<input type="checkbox"/> 이왕식 의원(2차 본회의)	38
<input type="checkbox"/> 김말분 의원(2차 본회의)	42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46
<input type="checkbox"/> 규칙안	81

<input type="checkbox"/> 승인안	93
<input type="checkbox"/> 동의안	189
<input type="checkbox"/> 결의안	216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43 제1차 정례회는 2010년 10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10월 26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1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12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장세현, 홍광중, 강영석 의원)을 청취한 후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였다.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 까지 5일간 각 상임위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 각종 안전처리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 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를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왕식, 김말분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9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 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한편,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14시부터 17시까지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간 친선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시·도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신천사업소 운동장에서 축구 등 5개 종목으로 성대히 개최하여 시·도 의회 의원 간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제1차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0-14호(2010년 10월 1일)

라. 집회일시 : 2010년 10월 12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0년 10월 12일 ~ 10월 26일(15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10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21	2	3	3	1	2	3	1	3	3
누 계	58	6	7	8	5	5	6	4	6	11

※ 제9대 의회 누계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2(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input type="checkbox"/> 일반 사항 보고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환경위원회 장세헌 의원(포항시) ○ 교육위원회 홍광중 의원(교육의원) ○ 농수산위원회 강영석 의원(상주시)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원안가결 ” ”
10. 26(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위원회 이왕식 의원(의성군) ○ 문화환경위원회 김말분 의원(비례대표)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p>10. 26(화) 11:00 (제2차)</p>	<p>7.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p> <p>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9.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10.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12.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p> <p>13. 2009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p> <p>14. 2009 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p> <p>15.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p>	<p>원안가결</p> <p>”</p> <p>”</p> <p>”</p> <p>”</p> <p>”</p> <p>”</p> <p>”</p> <p>”</p> <p>”</p>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2(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0.15(금) 15:3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3(수)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보관실, 기획조정실)	
10.14(목)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경제본부) ○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설립의 건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p>10.15(금) 14:00 (제3차)</p>	<p>□ 안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본부) ○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p>10.12(화) 15:30 (제1차)</p>	<p>□ 안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p>10.13(수) 11:00</p>	<p>□ 간담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야학운영 대표자 간담회 	
<p>10.13(수) 14:00 (제2차)</p>	<p>□ 안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복지여성국, 노인전문간호센터) ○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p>10.14(목) 11:00 (제3차)</p>	<p>□ 안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14(목) 11:00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3(수)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4(목) 14:00	<input type="checkbox"/>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9회 도민체전 준비상황 점검 ○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울 진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3(수) 10:30	<input type="checkbox"/> 행사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생활개선회 활력화 대회 	문 경
10.13(수) 14:00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APC 업무현황 청취 등 	
10.14(목) 10:30	<input type="checkbox"/> 업무 현황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기술센터 당면 현안사항 보고 ○ 영천경마장 부지매입관련 보고 	

10.14(목)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type="checkbox"/>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4(목) 12:00	<input type="checkbox"/> 간담회 개최 <input type="checkbox"/>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10.15(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type="checkbox"/>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농업기술원, 농수산물국)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3(수)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type="checkbox"/>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도청이전추진단, 건설도시방재국)	
10.14(목)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type="checkbox"/>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방본부)	
10.15(금)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type="checkbox"/>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5(금) 14:00	<input type="checkbox"/> 준공식 참석 <input type="checkbox"/> 영천소방서 준공식 참석	
10.21(목) 11:00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input type="checkbox"/>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후보지	밀 양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5(금)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심사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8(월) 10:30 (제4차)	<input type="checkbox"/> 결산심사 ○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 본청
10.19(화) 10:30 (제5차)	<input type="checkbox"/> 결산심사 ○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 본청
10.19(화) 10:30 (제6차)	<input type="checkbox"/> 결산심사 ○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청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2(화) 14: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주요 업무보고의 건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20(수)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주요 업무보고의 건	안 동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26(화) 10:2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Ⅲ. 의안처리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20 (51)	16 (47)	14 (23)	2 (4)			1 (1)	3 (3)		
조 례 안	소 계	12 (21)	8 (17)	7 (15)	1 (2)			1 (1)	3 (3)	
	의 회 제 안	4 (5)	4 (5)	3 (4)	1 (10)					
	도지사 제 출	6 (10)	4 (8)	4 (8)				1 (1)	1 (1)	
	교육감 제 출	2 (6)	0 (4)	0 (3)	0 (1)				2 (2)	
규 칙 안	1 (1)	1 (1)	1 (1)							
예산·결산	0 (1)	0 (1)		0 (1)						
동의·승인	5 (5)	5 (5)	4 (4)	1 (1)						
건의안										
결 의 안	1 (10)	1 (10)	1 (10)							
기 타 안	1 (13)	1 (13)	1 (13)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3건)

-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0. 1 도지사, '10.10.1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22 교육감, '10. 2. 8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10. 5 교육감, '10.10.15 교육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5 (10)	1 (1)	1 (3)	()	1 (3)	()	1 (1)	()	1 (1)	(1)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1						1			
행 정 보건복지	1	1								
문 화 환 경	1		1							
농수산	1								1	
건 설 소 방	1				1					
교 육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5 (10)	1 (5)	()	()	()	4 (5)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행 정 보건복지	1					1
문화환경	1					1
농 수 산	1	1				
건설소방	1					1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0건(조례안 7, 결산안 2, 동의안 1)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10.06.21)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회 (‘10.09.30)
김종천의원외12명 (‘10.10.01)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0.10.06)
경상북도지사 (‘10.10.01)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10.10.06)
경상북도지사 (‘10.10.01)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0.10.06)
경상북도지사 (‘10.10.0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10.06)
경상북도지사 (‘10.10.01)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10.06)
경상북도지사 (‘10.10.0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10.06)
경상북도지사 (‘10.10.01)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10.06)
경상북도교육감 (‘10.09.28)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육위원회 (‘10.09.30)
경상북도교육감 (‘10.10.05)	경상북도 교육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0.10.06)

2. 조례공포 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0.09.0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구분에 관한 조례	2010.09.27 (제3212호)
2010.09.09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2010.09.27 (제3213호)
2010.09.0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2010.09.27 (제3214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2010.09.13(월)	문화환경 위 원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관련 규탄성명서 발표 및 기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일체 문구 즉각 폐기 • 독도영유권 망동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 ※ 참석위원 : 전찬걸위원장, 김명호의원
농 수 산 위 원 회	2010.10.04(월)	농 수 산 위 원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道 농수산소관 의정활동 정보교환 • 도내 주요 농수산관련 축제 홍보 ※ 참석위원 : 이상용 위원장, 박권현 부위원장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지역발전 정책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0.09.09(목) 14:00
 - 장 소 : 엑스코
 - 참 석 : 이상효 의장외 全 도의원

- 2010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0.09.10(금) 11:30
 - 장 소 : 안동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이영식 의원

- 한류 드림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0.09.12(일) 18:30
 - 장 소 : 경주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효 의장

- 日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관련 규탄성명서 발표 및 기자간담회
 - 일 시 : 2010.09.13(월) 11:30
 - 장 소 : 문화환경위원실
 - 참 석 : 전찬걸 독도수호특별위원장, 김명호의원

- 2010년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 참석
 - 일 시 : 2010.09.13(월) 14:00
 - 장 소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경북도·경주시청 협력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0.09.14(화) 16:30
 - 장 소 : 경주시청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0년 지역발전 주간행사 참석
 - 일 시 : 2010.09.15(수) 10:00
 - 장 소 : 대구엑스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12회 경상북도 직업교육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0.09.15(수) 11: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서정숙·김원석·박태환·추재천 의원

- 아동 성폭력 안전지킴이회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0.09.15(수) 14: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경일대학교 자동차부품시험 지역혁신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0.09.15(수) 15:00
 - 장 소 : 경일대학교 체육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추석대비 제174차 안전점검의 날 참석
 - 일 시 : 2010.09.16(목) 11:00
 - 장 소 : 왜관역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2010 추석장사씨름대회 참석
 - 일 시 : 2010.09.20(월) 14: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전인철 의원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0.09.24(금) 19: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원
 - 참 석 : 이영식 의원

- 경상북도지사배 안동하회탈 e스포츠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0.09.25(토) 14:00
 - 장 소 : 안동체육관
 - 참 석 : 이영식 의원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0.09.28(화) 14:00
 - 장 소 : 전북 전주시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0년도 8월말 정년퇴직 교원 훈·포장 전수식 참석
 - 일 시 : 2010.09.28(화) 14:0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청 대회의실
 - 참 석 :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제51회 경상북도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0.09.28(화) 14: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김말분 의원

- 경북 농식품 수출상담회 참석
 - 일 시 : 2010.09.29(수) 11:20
 - 장 소 : 경주 코모도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최학철 의원

- 새마을 국제학술 심포지움 참석
 - 일 시 : 2010.09.29(수) 13:3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30차 FAO 아·태지역 총회 참석
 - 일 시 : 2010.09.30(목) 10:0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채옥주 의원

-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4기 지역회의 참석
 - 일 시 : 2010.09.30(목) 15:30
 - 장 소 : 성주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외 쏠 도의원

- 제21회 전국체육대회 경상북도 선수단 결단식 참석
 - 일 시 : 2010.10.01(금) 11:00
 - 장 소 : 경산중·고등학교 체육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경북보육인 한마음 대회 참석
 - 일 시 : 2010.10.02(토) 11:00
 - 장 소 : 구미CO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14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0.10.04(월) 11:00
 - 장 소 : 경주엑스포 문화공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채옥주 의원

- 제32회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0.10.05(화) 11:00
 - 장 소 : 경주보문단지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0년도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참석
 - 일 시 : 2010.10.05(화) 14:00
 - 장 소 : 주왕산관광호텔
 - 참 석 :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2010년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0.10.07(목) 14: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김수용·김희원·장두욱·장영석·한재석·홍진규·나기보·배수향 의원

- 6.25전쟁 60주년 상주 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0.10.08(금) 14:00
 - 장 소 : 상주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호 의장

- 구미디지털산업관 준공식 및 제10회 경북과학축전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0.10.08(금) 14:00
 - 장 소 : 구미디지털산업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제8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0.10.09(토) 11: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0.10.09(토) 11:00
 - 장 소 : 건설소방위원실
 - 참 석 : 고우현 건설소방위원장의외 건설소방위원

VI. 5분 자유발언

□ 2010년 10월 12일(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장세헌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포항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포항여자전자고 축구부 선수들이 마음 놓고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26일 아침 트리나드 토바고에서 열린 U-17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의 딸들이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에서 우승의 쾌거를 이룬 태극소녀들 중에는 자랑스러운 포항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주장 김아름, 골키퍼 김민아, 수비수 오다혜, 이들이 우승의 주역 3인방으로 포항여자전자고의 선수들입니다.

불모지 한국여자축구가 세계를 제패하고 귀국하는 순간 온 국민은 열렬히 환영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승의 주역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를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과 의장님께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포항시는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여자전자고 축구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2년 14명으로 창단한 이래 전국대회를 다섯 차례나 우승하고 U-20, U-17 여자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수들이 졸업하고 나면 뒤를 이어갈 선수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언제나 부족한 예산문제도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자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가운데 선수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급학교 진학, 실업팀 진출, 취업까지 앞으로의 진로문제가 이들 선수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포항여자전자고의 선수들은 경북도내에서 여자 축구부가 있는 하나뿐인 위덕대 등에 진학하거나 취업해 왔지만 위덕대는 예산부족 등으로 팀 해체 위기로 어려움이 있어 이들이 갈 곳은 타 지역이나 전국을 무대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포항여자전자고가 앞으로 국내 최고의 명문 축구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대학 내의 축구팀 창단이나 육성이 필요하며 실업팀 창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행한 일은 월드컵 제패이후 포항여자전자고로 진학하려는 선수들이 몰리면서 그 중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도 있어 포항여자전자고의 축구부는 장래 희망이 밝아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을 빛낸 이 어린 앳된 소녀들의 장래를 지키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환영행사도 필요하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대한의 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체육문화를 창달코자 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께서서는 경북여자 축구 육성·발전 프로그램을 하루속히 만드셔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경북도가 여자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년 10월 12일(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홍광중 의원(교육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김관용 도지사님과 간부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명품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도의회에 나와서 근 100일 가까운 일정 중에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교육위원 제4 선거구 안동,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청송 8개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교육위원입니다. 다른 도의원에 비해서 여러 군데 다닐 곳도 많고 바쁘시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저도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말이 꼭 필요하나, 그리고 존경을 하지도 않는데 ‘존경한다’ 하는 말을,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자리도 아닌데 ‘존경한다’는 말을 듣기가 조금 거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관례상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굳이 ‘존경하는’ 하는 그런 말을 붙여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발언하는데 이제 나오면서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

님” 했는데, 이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은 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회기에 우리 의원 중에서 도정 질문을 한 분이 계십니다. 도정 질문을 하고 도지사님께 질문을 할 때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도의원은 도지사님과 버금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훨씬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이기에 때문에 ‘도백’이라고 합니다. ‘도백’은 말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부들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책임 있는 대답은 도지사님이 하셔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형으로서 골골에 있는 동생들에게, 또 골골에 있는 군민에게, 도민에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보고 계십니다라는 저번에 경남도지사 김태호 총리 후보자보다 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도민과 또 도의원과 직접 대화를 하시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발전 있으시기를 빌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번에 도의회 연수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프닝이 뭐냐, 출발하는 장소가 세 번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의회 전정이었다가 다음은 또 어느 곳, 다음은 어느 곳, ‘007’ 방불케 하는 그런 출발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뚝뚝하게 나가고 돌아올 때 뚝뚝하게 그 열매를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출장 가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보통 우리 교육계에서는 연수를 콩나물 시루에 물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다 흘러 내려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연수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해외연수에 참여하신 대구신문 김상만 국장이 이런 자료를 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 이외 보고 온 것이 우리는 앞으로 백 년대계의 국력을 신장시키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국가의 국정지표로, 도의 도정지표로 세워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나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자원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늘리고 앞으로 백 년 동안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제1위에 놔둬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모든 수단과 정책을 동원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 우리도 단일민족에서 이제는 복수민족, 다문화 민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기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가슴속 깊이 새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에 가보니까 아주 50m도 넘는 큰 깃대에 아주 큰 그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국기 게양이 너무 한곳에 일률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민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여러 수십 군데 국기가 게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우리 교육예산은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경직성이 강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싹둑 잘라내면 교육의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낸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약 15억을 삭감해서 보내면서 그 뒤에 부서로 영덕·청도 지역교육청 신청사 건축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하거나 그다음 활용계획이 섰을 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부서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 돈이 약 100억이 돼요. 그런 돈은 잘라내도 교육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라낸 초등교육과의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체육과의 해외연수비, 이런 것들은 수년 동안 그 분야에 공헌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잘라내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나물에 흐르는 물을 너무 아끼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은 흐르고 자라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젊은 교사들에게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근세사회에도 ‘신사유람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유람단’ 이라고 하는 것은 유람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각박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화장실 개수비를 10% 잘라낸 데 대해서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해서 상호 보완해 가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한 내용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싹둑 잘라낸다면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서로 잘 보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 10월 12일(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독도의 달에 개최되는 제243회 정례회에서 좌초위기에 처한 독도수호종합대책과 관련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고 정부에 당초대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은 경상북도민이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이면서 독도의 달에는 도민의 단결과 독도침탈 시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제1차 5개년 계획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1차 계획의 진행상황을 보면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전면 수정되거나 유보되거나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1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동도에 건축하려던 독도체험장은 4억 5000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만 마친 상태에서 장소를 울릉도로 옮겼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 경상북도기, 울릉군기를 달기 위한 게양대 설치는 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기게양대 하나만 설치하라고 한답니다. 문화재청이 언제부터 이런 일까지 간섭했습니

까?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표시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2011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서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4층 건물로 설치하려던 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만 마치고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리모델링한 서도 주민숙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문화재형상변경심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까지 300억을 투입해서 기상·해양·환경관측 및 R&D 기능을 수행하겠다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정부 특정부처의 반대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한답니다.

독도 북서쪽 1km 해상에 철골기지를 건설하는 동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반대한다는데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해양과학기지는 독도수호대책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5000억 원을 들여 건설하겠다던 방파제 500m는 기본설계는 마쳤으나 2009년 문화재형상변경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건설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독도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일본이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를 비웃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 달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후 일본 외상은 우리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철회 요구에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관방장관은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의 축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외교통상부는 한국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 정부의 독도와 관련한 분위기를 꺾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망언을 중지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 내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조용한 외교를 펼쳐 왔으나 독도수호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에서 보듯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다투고 있는 쿠릴열도 4개 도서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섬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영토와 관련한 주변 정세는 실효적 지배에 안도하지도 않고 안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도와 관련한 정책을 단호하면서도 강경한 의지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들은 당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두사미로 퇴색되고 있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 원래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에는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국회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집행부는 내년부터 추진되는 2차 5개년 계획에 대해 제대로 의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독도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더 자주 거론해야 한다는 세간의 탄식이 없어질 때 독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년 10월 26일(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이왕식 의원(농수산위원회) ◎

의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구 경북은 보수꼴통’이라는 상식 이하의 망언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응당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정을 운영·감독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두 국회의원이 이를 망각하고 그릇된 사고와 편향된 인식으로 감히 대구·경북의 민심을 일언지하에 보수꼴통이라고 무시하고 매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논하는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막말을 내뱉었다는 것은 몰상식한 시정잡배와 하나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민통합에 앞장서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대변하고 있음을 오만방자하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흑백논리에 물들어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 최대의 해악이 되고 있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면서 악몽 같은 이념분쟁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고 있으며 어떠한 지역적 역차별

도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깔보았으면 이렇게 대놓고 참으로 썼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준다는 말입니까? 막말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아온 선열과 앞으로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후손들에게 명예와 자긍심마저 빼앗아가버렸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삼국시대,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근간으로, 또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의 중심에 선 대구·경북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 격노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발언으로 여론이 들끓게 되고 나서입니다. 두 국회의원은 우선 불같은 여론을 피하고 보자는 알팍한 수로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여 웅졸한 해명서를 내고 언론의 악의적 편집이라는 등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은 자명한데 참으로 한심한 작태에 안타까움과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 김상희 두 의원의 발언이 개인적인 발언인가, 아니면 그 당의 당론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두 의원의 발언이 당론이라면 그 당은 즉각 해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소위 민주진보세력이라고 자부하고 힘없는 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권영길, 김상희 두 국회의원은 잘 들으십시오.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를 단 한번에 부정적이고 제거해야 할 보수꼴통으로 단정해 버린 이 사건을 우리는 이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스로 이념적인 색깔론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대구·경북지역을 통틀어 보수꼴통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또 다른 이념적 색깔론

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구·경북을 보수꼴통이라고 몰아세워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꼼수를 부릴 의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김상희, 권영길 의원이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을 보수꼴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권영길, 김상희 의원은 공산당인가를 나는 묻고 싶습니다. 두 의원은 하루 빨리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 길만이 두 국회의원이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마다 국난 극복과 국가 발전을 주도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부로 훼손한데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의 대표로써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명예롭게 사퇴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이미 국회에도 대구·경북 시·도민 매도 발언 재발방지 및 관련의원 조치요구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차원에서 두 국회의원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지역을 폄훼하는 발언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를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권영길, 김상희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대구·경북 시·도민에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라

둘째, 권영길, 김상희 의원은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준데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셋째, 국회에서는 두 국회의원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

야 할 것이며 특정지역을 편취하는 발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당장 수립하라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10년 10월 26일(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김말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말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홈플러스, 이마트 등 외지의 대형 유통업체가 우리 지역에도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의 전통 시장이 몰락하고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기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액의 지역자금 역외유출로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지역상품 판매, 지역인력 고용, 영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등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거대자본과 유통망을 앞세워 골목경제와 지방경제를 무너뜨리고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경상북도의 최근 3년간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SSM의 수는 2007년만 하여도 각각 9곳과 5곳으로 모두 14곳이었지만 2010년 현재는 각각 9곳과 11곳으로 늘어나 모두 20곳에 이르러 42.8%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SSM의 수는 120%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SSM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매출규모는 2007년 5,166억이던 것이 2009년말 현재 6,036억원으로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경상북도 내 대형유통업체와 SSM이 입점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인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 그 폐해가 더욱 큼니다.

지난 2009년부터 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조정을 유도하는 사업조정제도를 임시방편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SSM 규제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SSM의 진출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업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상의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거나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등 편법 개점까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상행위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사회의 중대한 추세라고 본다면 하루빨리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SSM 규제관련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관련법규의 입안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 차원의 강력한 의지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형유통업체와 SSM 등의 매출규모, 영업이익, 지역사회 기여금, 지역인력고용, 지역상품 판매실적, 지역금융 유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에도 기본적인 조사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이나 지역 기여도 제고 방안 등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경상북도 차원에서 역내에 진출한 유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모색하고 적극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대책을 마련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 록

- 조례안 : 8건
- 결산안 : 2건
- 승인안 : 1건
- 동의안 : 2건
- 결의안 : 1건

□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0년 10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를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p> <p>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단,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 ----- ----- ----- -----</p> <p>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 ----- -----</p> <p>②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호

2010년 10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u>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같음 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u> 4. (생략) 5. (생략) 6. (생략) <p>1. ② (생략)</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u>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p>2. ②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호

2010년 10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도정발전과 관심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3.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 심의

4.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과제 검토와 시행중인 정책의 연구·자문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연구단체 등록시까지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의 장이 추천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각 2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3.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 단,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소관 연구단체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연구단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단체)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둔다.

②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③ 각 연구단체는 대표를 두어야 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명칭) 각 연구단체는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단체명을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연도 10월 2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심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연구단체의 대표는 소관 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취소) 위원장은 소속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나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①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단체 운영) ① 연구단체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 ② 연구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연구단체 대표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1명을 연구단체의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외부전문가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교수와 연구원 등을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기간) ① 연구활동기간은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9월말까지로 한다. 단,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매 연도 10월말까지는 연구활동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사용하고 남은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용역) ① 위원회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건의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운영과 그에 속한 연구단체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입법정책지원팀장이 담당한다.

② 각 연구단체의 세미나, 현지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활동은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제19조(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범위)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전문가 등의 자문경비와 자료발간비 등
2. 그 밖에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제21조(용도의 사용금지)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연구단체 등록시까지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생략>	②<생략>
제8조(위원회 운영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제9조(연구단체)	제8조(연구단체)
제10조(연구단체의 명칭)	제9조(연구단체의 명칭)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제12조(등록취소)	제11조(등록취소)
제13조(연구활동계획서)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14조(연구단체의 운영)	제13조(연구단체의 운영)
제15조(연구계획의 변경)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
제16조(연구기간)	제15조(연구기간)
제17조(채택된 의안의 제출)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로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용역)	제17조(연구용역)
제19조(사무처리)	제18조(사무처리)
제20조(연구활동비)	제19조(연구활동비)
제21조(지원범위)	제20조(지원범위)
제22조(용도의 사용금지)	제21조(용도의 사용금지)
제23조(의견청취 등)	제22조(의견청취 등)
제24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제25조(시행규칙 등)	제24조(시행규칙 등)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호

2010년 10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경상북도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분규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 담당 실·국·본부장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경상북도 대표자를 말한다)중,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사용자 단체의 경상북도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협의회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비상설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도 노사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직원은 도 노사업무 담당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등의 회의 준비 및 진행
2.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 본 협의회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 등

제10조(분과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협의회는 노사조정 협력·고용 심의분과협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합동추진단의 설치 등)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도 담당 실·국·본부장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공동단장이 된다.

③추진단원은 6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일자리창출 담당부서의 장, 노사담당부서의 장) 및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담당과장

2.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사무처장, 경북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3. 경북상공회의소 사무국장

④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동단장의 협의에 의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 주관은 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차례로 한다. 다만, 첫 회의는 공동 주관한다.

⑤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

2. 분과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

3. 협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회 등은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 관계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0년 10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직 및 직위해제”을 “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제6항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 중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한다.

제21조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별표1과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복무선서) ①~②(생략) <u><신설></u></p>	<p>제2조(복무선서) ①~②(현행과 같음) <u>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과 같이 한다.</u></p>
<p>제12조(복장등)①(생략)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p>	<p>제12조(복장등)①(현행과 같음) ②----- ----- <u>(행정안전부령)</u>-----</p>
<p>제13조(근무시간 등)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④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도지사 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과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 과 근무일)도지사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 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삭 제></p>
<p>제18조(연가일수)①(생 략)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u>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p>	<p>제18조(연가일수)①(현행과 같음) ②----- ----- ----- -----<u>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기간</u>----- ----- -----</p>
<p>1. ~ 3.(생 략) ③해당 연도에 <u>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u>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p>	<p>1. ~ 3.(현행과 같음) ③-----<u>정직·강등 및 직위해제</u>----- -----</p>

현 행	개 정 안
<p>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21조(병가)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4. (생 략)</p> <p>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p> <p>6.~9. (생 략)</p>	<p><u>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병가)①----- ----- ----- ----- ----- -----, 제20조 제4항-----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 ----- -----</p> <p>1.~4. (현행과 같음)</p> <p>5. 「<u>산업안전보건법</u>」 제43조에 따른 <u>건강진단</u> 또는 「<u>국민건강보험법</u>」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p> <p>6.~9.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p> <p>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p>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 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p> <p>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p> <p>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p> <p>④~⑩ (생 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②(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⑩ (현행과 같음)</p>
<p>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 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제25조의2(국외여행)공무원은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견문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u></p>	<p><u>제25조의2(국외여행)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u></p>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0년 10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신 설〉</p>	<p>제10조의 2(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p> <p>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p> <p>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 할 수 있다.</p> <p>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 하여야 한다.</p>	<p>○자동차 등록령 개정으로 '10. 12. 1 부터 자동차 등록 사무가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능함에 따라, 현재 도내 시·군에서만 신고·수납이 가능한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p>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0년 10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u>1년</u>(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p> <p>----(이하생략)----</p> <p>③ <생략></p>	<p>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u>1년</u>이내에 -----</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u>1년</u>(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u>1년</u>이내에-----</p> <p>-----</p> <p>③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0년 10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제2호 숙박비(1야당)란의 “30,000”을 “4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단위:원)						[별표1] (단위: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버스)운임	숙박비 (10당)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버스)운임	숙박비 (10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 비 로 지 급)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 비 로 지 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u>30,000</u>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u>40,000</u>
비고 : (생략)						비고 : (현행과 같음)					

□ 규칙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호
2010년 10월 26일

경상북도의회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 심의)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부전문가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등록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변경사항 통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의원 등의 변경 사항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연구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연구활동결과 등의 보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등록부) 입법정책지원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등) 각 연구단체에 소속된 외부전문가가 연구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위원회에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안)

0 0 대 학 교
교수 김 0 0

귀하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2.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3.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경사항 통보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단체의 명칭 :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변동일자
대표자					
회 원 (의 원)					
회 원 (외부전문가)					

년 월 일

[통보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연구 목적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세 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성명		의원
심사 결과	심사 내용	
	연구 활동비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연구 내용	당 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액	금	원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전문가 활용 경비		금	원	
기 타		금	원	
특기사항				

- [붙임] 1. ○○년도 연구활동결과 최종보고서 3부
2. ○○년도 연구활동비 정산서 3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 승인안

-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0.10.26(화)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경 상 북 도 의 회

차 례

1. 소관기관
 2. 심사경과
 3. 제안설명의 요지
 4. 세입·세출 결산
 5. 세입·세출외 결산
 6. 검토의견
 7. 질의·답변요지
 8. 토론요지
 9. 심사결과
 10. 소수의견요지
 11. 기타 필요한 사항
- ※ 보조자료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9. 30,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0. 10.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10. 18 : 상정·질의·토론)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10. 19 : 상정·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운용의 결산 승인

4. 세입 · 세출 결산

1) 결산규모

가. 총괄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 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03억 19백만원¹⁾을 포함하여 5조 5,678억 28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5조 7,052억 61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5조 3,723억 53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3,329억 7백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84억 33백만원임.

◆ 세입 · 세출 결산 규모 ◆

(단위 : 억원)

회 계 명	예산현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입 (B)	세출 (C)	잉여금 (B-C)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5,678	57,053	53,724	3,329	682	63	2,584
일 반 회 계	48,132	48,663	46,681	1,981	652	63	1,266
특 별 회 계	7,546	8,390	7,042	1,348	30	0	1,318

1) 종합심사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71억 41백만원을 포함하여 4조 8,132억 1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4조 8,662억 88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4조 6,681억 38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1,981억 50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6억 48백만원임.

(2) 특별회계

-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78백만원을 포함하여 7,546억 28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8,389억 73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7,042억 15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1,347억 58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7억 85백만원임.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

□ 회계별 결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예산현액	5,567,828	100.0	4,813,201	100.0	754,628	100.0	
세입결산액(A)	5,705,260	102.5	4,866,288	101.1	838,973	111.2	
세출결산액(B)	5,372,353	96.5	4,668,138	97.0	704,215	93.3	
잉여금(A-B)	332,907	6.0	198,150	4.1	134,758	18.0	
명시·사고이월	68,219	1.2	65,246	1.4	2,973	0.4	
	보조금집행잔액	6,256	0.1	6,256	0.1	0	0
	순세계잉여금	258,433	4.6	126,648	2.6	131,785	17.5

□ 회계별 결산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A)	결산액			잉여금내역		
		세입(B)	세출(C)	잉여금(B-C)	이월사업비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계	55,678	57,053	53,724	3,329	682	63	2,584
일반회계	48,132	48,663	46,681	1,981	652	63	1,266
특별회계	7,546	8,390	7,042	1,348	30	0	1,318
공기업	소계	2,753	3,555	2,515	1,040	0	1,040
	지역개발기금	2,753	3,555	2,515	1,040	0	1,040
기타	소계	4,793	4,834	4,527	308	30	278
	의료급여기금	3,849	3,850	3,835	15	0	15
	치수사업	347	368	311	58	26	32
	경북도립대학운영	83	83	78	5	0	5
	광역교통시설	20	21	13	8	0	8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94	511	290	221	4	217

2) 세입결산

가. 총괄

-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5조 7,052억 61백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5조 5,678억 28백만원 보다 1,374억 33백만원이 증가(2.5%)하였으며,
- 그 중 일반회계가 4조 8,662억 88백만원(85.3%)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8,389억 73백만원(14.7%)임.
- 2009년도 미수납액은 752억 40백만원으로서, 127억 18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25억 2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세입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C/B)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	
합계	5,567,828	5,780,501	5,705,261	75,240	12,718	62,522	98.7
일반회계	4,813,201	4,939,305	4,866,288	73,017	12,695	60,322	98.5
특별회계	754,628	841,196	838,973	2,223	24	2,200	99.7
공기업	275,300	355,529	355,529	0	0	0	100.0
기타	479,328	485,667	483,444	2,223	24	2,200	99.5

$$\begin{array}{l} \text{※ 예산현액} = \text{예산액} + \text{전년도 이월액} \\ \text{5,567,828백만원} \quad \text{5,427,509백만원} \quad \text{140,319백만원} \end{array}$$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8,662억 8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조 8,132억 1백만원 보다 530억 87백만원(1.1%)이 증가하였으며,
-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7,988억 50백만원, 세외수입 4,201억 58백만원, 지방교부세 8,730억 24백만원, 국고보조금 2조 6,292억 56백만원, 국내차입금 1,450억원임.
- 미수납액은 730억 17백만원으로, 126억 95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03억 2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처 분	다음연도 이월	C/A	C/B
합 계	4,813,201	4,939,305	4,866,288	73,017	12,695	60,322	101.1	98.5
지방세	760,000	867,509	798,850	68,659	12,668	55,991	105.1	92.1
세외수입	397,528	424,516	420,158	4,358	27	4,331	105.7	99.0
지방교부세	851,150	873,024	873,024	0	0	0	102.6	100.0
국고보조금	2,659,522	2,629,256	2,629,256	0	0	0	98.9	100.0
국내차입금	145,000	145,000	145,000	0	0	0	100.0	100.0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4,813,201백만원 4,676,060백만원 137,141백만원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389억 7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546억 28백만원보다 843억 45백만원이 증가(11.2%) 되었으며,
-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3,555억 29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850억 38백만원, 치수사업 368억 48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82억 93백만원, 광역교통시설 21억 29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511억 37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22억 23백만원으로, 24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1억 99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부문 자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C/A	C/B
합계	754,628	841,196	838,973	2,223	24	2,199	111.2	99.7
지역개발기금	275,300	355,529	355,529	0	0	0	129.1	100.0
의료급여기금	384,884	385,038	385,038	0	0	0	100.0	100.0
치수사업	34,764	37,531	36,848	682	24	659	106.0	98.2
경북도립대학운영	8,281	8,293	8,293	0	0	0	100.1	100.0
광역교통시설	1,974	3,669	2,129	1,541	0	1,541	107.8	58.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9,424	51,137	51,137	0	0	0	103.5	100.0

$$\begin{aligned}
 \text{※ 예산현액} &= \text{예산액} + \text{전년도 이월액} \\
 754,628\text{백만원} &= 751,449\text{백만원} + 3,178\text{백만원}
 \end{aligned}$$

3) 세출결산

가. 총괄

- 2009년도 세출결산액은 5조 3,723억 5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조 5,678억 28백만원 대비 96.5%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조 6,681억 3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7,042억 15백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집행잔액 1,954억 75백만원 중 이월사업비 682억 19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272억 56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세출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비율 (B/A)
합계	5,427,509	5,567,828	5,372,353	68,219	127,256	96.5
일반회계	4,676,060	4,813,201	4,668,138	65,246	79,817	97.0
특별회계	751,449	754,628	704,215	2,973	47,440	93.3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조 6,681억 38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4조 8,132억 1백만원 대비 97.0%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5,262억 58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844억 49백만원, 교육 30억 47백만원, 문화 및 관광 2,599억 2백만원, 환경보호 4,866억 22백만원, 사회복지 1조 1,775억 74백만원, 보건 803억 4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8,618억 72백만원, 산업·중소기업 1,340억 80백만원, 수송 및 교통 3,564억 1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71억 23백만원, 과학기술 170억 74백만원, 기타 2,738억 82백만원임.

- 집행잔액 1,450억 62백만원 중 이월사업비 652억 46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798억 17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부문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E)	지출비율 (C/B)
합 계	4,676,060	4,813,201	4,668,138	65,246	79,817	97.0
일 반 공 공 행 정	523,830	533,973	526,258	4,092	3,622	98.6
공공질서및안전	273,573	295,831	284,449	9,846	1,537	96.2
교 육	3,063	3,063	3,047	0	16	99.5
문 화 및 관 광	260,680	261,123	259,902	182	1,038	99.5
환 경 보 호	482,034	487,070	486,622	0	448	99.9
사 회 복 지	1,213,142	1,213,142	1,177,574	0	35,568	97.1
보 건	78,877	80,578	80,342	0	236	99.7
농림해양수산	836,297	876,091	861,872	6,219	7,999	98.4
산업중소기업	134,405	134,405	134,080	0	325	99.8
수 송 및 교 통	324,850	394,059	356,413	34,344	3,302	90.4
국토및지역개발	216,804	218,551	207,123	10,562	865	94.8
과 학 기 술	17,295	17,295	17,074	0	221	98.7
예 비 비	34,779	21,439	0	0	21,439	0.0
기 타	276,431	276,582	273,382	0	3,200	98.8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042억 15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7,546억 28백만원 대비 93.3%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2,515억 22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835억 14백만원, 치수사업 310억 96백만원, 경북도립대학 운영 77억 60백만원, 광역교통시설 13억 1백만원,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290억 22백만원임.
- 집행잔액 504억 13백만원 중 29억 73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74억 40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E)	지출비율 (C/B)
합 계	751,449	754,628	704,215	2,973	47,440	93.3
지역개발기금	275,300	275,300	251,522	0	23,778	91.4
의료급여기금	384,884	384,884	383,514	0	1,370	99.6
치 수 사 업	32,180	34,764	31,096	2,573	1,095	89.4
경북도립대학운영	8,281	8,281	7,760	0	521	93.7
광역교통시설	1,974	1,974	1,301	0	673	65.9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8,830	49,424	29,022	400	20,003	58.7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사용

-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²⁾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지원 60백만원, 지역에너지 교육 및 홍보추진 15백만원 등 총 3건에 1억 25백만원이며,
- 예산이체³⁾는 道 본청의 조직개편과 부서간 업무기능 조정으로 인하여 총 45건에 375억 77백만원임.

라. 계속비 집행

- 2009년도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⁴⁾

-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 347억 79백만원 중 경상북도 도 의원 장례비 지원 外 21건 133억 40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2억 6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7백만원임.

2) 『예산전용 상세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3) 『예산이체 상세내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35~838쪽 참조

4)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⁵⁾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집행
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도본
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비』 등 84건에 682억 19백만원
으로
- 그 중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82건에 652억 46백
만원으로서 명사이월은 26건 351억원이며, 사고이월은
56건에 301억 46백만원임.
-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29억 73백만원으로서 명
사이월에 2건 29억 73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음.

사. 채무부담 행위⁶⁾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어항건설 등 5건에
289억 83백만원임.

아. 수입대체경비

- 지방재정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
정에 의한 공무원교육원의 수입대체경비 중 세입결산액은 9억
1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억 12백만원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6)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5. 세입·세출외 결산

1) 기 금

가. 총 괄

- 2009년도말 경상북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 2,639억 81백만원 보다 325억 68백만원이 증가한 2,965억 49백만원임.

나.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8년 말 현재액(A)	2009년도 증감			2009년말 현재액(E=A+D)
		수납액(B)	지출액(C)	증감(D=B-C)	
계	269,981	108,234	75,666	32,568	296,550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3,388	118	110	9	3,397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05,656	82,884	29,220	53,664	159,320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4,497	440	437	2	4,599
체 육 진 흥 기 금	15,723	547	500	47	15,770
농 어 촌 진 흥 기 금	64,240	12,239	35,659	△23,420	40,820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18	53	53	1	1,519
포 플 라 장 학 기 금	265	12	9	3	268
사회복지기금(장학/자활)	6,868	291	96	196	7,063
사회복지기금(장애인)	2,137	74	71	3	2,140
사회복지기금(노인)	2,518	87	121	△34	2,484
재 해 구 호 기 금	16,703	578	14	564	17,266
여 성 발 전 기 금	3,591	125	160	△35	3,555
청 소 년 육 성 기 금	3,398	117	130	△12	3,386
식 품 진 흥 기 금	12,382	3,125	3,955	△830	11,552
재 난 관 리 기 금	19,984	6,232	3,872	2,360	22,34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014	1,312	1,259	53	1,067
통 합 관 리 기 금	79,162	6,489	2,786	3,703	82,865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집계에는 미포함

2) 채권 및 채무

가. 채 권

- 2009년도말 경상북도의 채권현재액은 1조 3,618억 56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1조 3,473억 20백만원보다 145억 3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55억 56백만원, 특별회계 9,444억 83백만원, 기금 3,018억 16백만원이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 2백만원, 융자금 채권이 1조 3,616억 67백만원, 미수금 채권이 86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채 권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기 금	
계	1,361,856	115,556	944,483	301,817	
보증금채권	102	96	6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전용회선 예치금 등 96 ○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립대학 6
융자금채권	1,361,667	115,411	944,478	301,7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택개량 98,910 · 새마을소득지원사업외1건 16,501 ○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기금 944,477 ○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진흥기금 89,333 · 사회복지기금 60 · 중소기업육성기금 195,480 · 식품진흥기금 10,955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등 5,951
미수금채권	86	49	0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택개량 49 ○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택개량 37

나. 채 무

- 2009년말 경상북도의 채무현재액은 8,826억원으로, 2008년말 6,545억원보다 2,281억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92억원, 특별회계 7,334억원임.
- 종류별로는 지방채 7,334억원, 차입금 1,202억원, 채무부담행위 290억원임.

◆ 채무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회 계 별				채 무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기 금	
계	8,826	1,492	7,334	0	
지 방 채	8,536	1,202	7,334	0	
일반회계 차입금	1,202	1,202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1,200 • 청사정비기금 차입 2
공 기 업 특별회계	7,334	0	7,334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기금채권 매출 7,334
채무부담행위	290	290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건설 280 • 지방어항건설 10

3)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09년도말 경상북도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48억 23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8,025억원 보다 2,423억 23백만원이 증가 하였음.
-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토지가 4,005필지 1,506억 5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26필지 578억 57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928억 1백만원이 순증 하였음.
 - 건물은 35동 271억 2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76동 140억 54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130억 70백만원이 순증 하였음.
 - 또한 지적재산권이 43건 42백만원, 유가증권이 2건 1,346억원, 용익물건이 30건 18억 11백만원이 순증하였으며 그 외 기타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

◆ 공유재산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종 류 별	2008년도		증 감		2009년도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8,025		2,423		10,448
토 지(필)	75,846	6,052	3,779	928	79,625	6,980
건 물(동)	649	1,594	△41	131	608	1,725
입목죽(주)	3,745,000	95	0	0	3,745,000	95
공작물(점)	3	32	0	0	3	32
선 박(척)	2	21	0	0	2	21
항공기(대)	2	131	0	0	2	131
지적재산권	0	0	43	419	43	419
유가증권(주)	1,947,953	97	2	1,346	1,947,955	1,443
용익물권(건)	0	0	30	18	30	18
회원권(건)	49	2	0	0	49	2

나. 물 품

- 2009년도말 경상북도의 물품 현재액은 722억 84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638억 21백만원 보다 84억 6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소방차 및 인명구조차 95대 77억원, 구급차 28대 25억원 등을 구매 또는 관리 전환하여 135억원이 증가하고, 소방차 및 인명구조차 61대 25억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9대 7억원 등을 매각 또는 관리 전환하여 51억원이 감소하였음.

◆ 증감사유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도		증 감		2009년 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2,293	638	101	85	2,394	723
구 매	1,806	530	187	87	1,993	617
관리전환	487	108	△86	△2	401	106

4) 금 고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2009년도말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5조 3,497억 30백만원, 세출 5조 1,208억 30백만원으로 2,289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회계별 금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잔 액
회 계 별				
합 계		5,349,730	5,120,830	228,900
일 반 회 계		4,866,287	4,668,138	198,149
특 별 회 계		483,443	452,692	30,751
	의료급여기금운영	385,038	383,514	1,524
	치 수 사 업	36,848	31,096	5,752
	경북도립대학운영	8,293	7,760	533
	광역교통시설	2,128	1,301	827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1,136	29,021	22,115

나. 세입세출외 현금

- 2009년도말 경상북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6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9억 31백만원 보다 3억 28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17백만원, 보관금 7억 63백만원, 잡종금 등 기타 18억 23백만원임.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 증감			2009년도말 잔액
		증가액	지출액	차감액	
합계	2,931	83,658	83,986	△328	2,603
보증금	45	145	173	△28	17
보관금	847	18,170	18,254	△84	763
잡종금 등 기타	2,039	65,343	65,559	△216	1,823

6.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문

가. 결산규모

-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5조 5,678억 28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현액 4조 8,738억 96백만원 보다 6,939억원(14.2%)이 증가하였으며,
- 2003년부터 최근 7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6.9%임.

◆ 예산현액 연도별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 장 륜(%)	
								연평균	전년대비
예산현액	38,598	32,273	35,718	39,550	43,032	48,739	55,678	6.9	14.2

-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5%인 5조 7,052억 61백만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5조 3,723억 53백만원으로,
 - 결산잉여금은 3,329억 7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 명시이월 380억 73백만원, 사고이월 301억 46백만원으로 총 이월사업비 682억 19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2억 5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584억 33백만원임.

나.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세입부문은 연평균 11.4%, 세출부문은 12.5%씩 증가하고 있으며,
 - 전년대비 결산 결과는 세입부문이 14.9%, 세출부문이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는 전전년 대비 11.0%와 11.9%에 비해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회계별 전년대비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부문 15.8%, 세출부문 20.0%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이 10.0%, 세출부문이 0.1% 증가하였는데 세출보다 세입부문이 다소 많은 이유는 공기업(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부문이 전년도 대비 38.3%나 증가한 것 때문임.
- **중앙부처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2%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25.5%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은 재정보전분이 대폭 감소함에 따른 것이며,
- 앞으로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 SOC사업의 국고보조금 의존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재정기반이 열악한 우리 道의 경우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에 의한 시책을 반영하여 이러한 의존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세외수입의 극대화 및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을 확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모색 되어야 함.

◆ 수입 · 세출 5년간 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장율(%)	
							연평균	전년대비
세 입 (A)	합 계	3,702,370	4,107,912	4,472,017	4,964,626	5,705,261	11.4	14.9
	일반회계	2,992,674	3,356,733	3,711,722	4,201,944	4,866,288	-	15.8
	특별회계	709,696	751,179	760,295	762,682	838,973	-	10.0
	공기업	408,985	368,212	273,637	257,101	355,529	-	38.3
	기 타	300,711	382,967	486,658	505,581	483,444	-	△4.4
세 출 (B)	합 계	3,360,492	3,775,453	4,105,826	4,592,533	5,372,353	12.5	17.0
	일반회계	2,805,319	3,092,367	3,383,907	3,888,972	4,668,138	-	20.0
	특별회계	555,173	683,086	721,919	703,561	704,215	-	0.1
	공기업	258,608	318,571	260,056	229,776	251,522	-	9.5
	기 타	296,565	364,515	461,863	473,785	452,693	-	△4.5
잉여금 (A-B)		341,878 (9.2%)	332,459 (8.1%)	366,191 (8.2%)	372,093 (7.5%)	332,907 (5.8%)	-	-

◆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 ◆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2008년 대비 증감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예산현액	%	결 산 액	%
계	41,169	48,132	42,019	48,663	6,963	16.9	6,644	15.8
지 방 세	7,260	7,600	7,883	7,988	340	4.7	105	1.3
세 외 수입	3,931	3,975	4,066	4,202	44	1.1	136	3.3
지방교부세	9,014	8,512	9,117	8,730	△502	△5.6	△387	△4.2
보 조 금	20,965	26,595	20,954	26,293	5,630	26.9	5,339	25.5
지방채및예치금	0	1,450	0	1,450	1,450	100.0	1,450	100.0

2) 세입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규모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조 8,662억 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 그 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3조 5,022억 80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2.0%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4,952억 37백만원(16.5%)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 2,190억 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41억 7백만원(2.0%)이 증가하였음.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총 결손처분액은 127억 1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6억 9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백만원임.
-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결손처분은 126억 68백만원, 세외수입은 27백만원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전년도 123억 96백만원에 비해 2억 72백만원이 증가한 126억 68백만원을 정리하여 2.2% 증가하였으며, 체납율은 2004년~2006년까지는 완만하게 줄어들었으며 2007년~2008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0.3%,

1.2%씩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다시 0.3%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세 결손처분액 126억 68백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55억원, 행방불명 5억원, 시효완성 5억원, 공매시무배당 11억원, 기타 51억원 등으로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 수 납 액			체납율(%) (C/A)
			계(C)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2004년	657,034	601,356	55,678	7,217	48,461	8.5
2005년	753,105	699,136	53,969	3,956	50,013	7.2
2006년	869,517	811,081	58,436	6,828	51,608	6.7
2007년	897,135	833,996	63,139	9,276	53,863	7.0
2008년	859,046	788,327	70,720	12,396	58,324	8.2
2009년	867,509	798,850	68,659	12,668	55,992	7.9

◆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 타
지방세	12,668 (100.0%)	5,521 (43.6%)	484 (3.8%)	487 (3.8%)	1,068 (8.4%)	5,107 (40.3%)

나.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경상북도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6종으로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389억 73백만원임. 회계별로는 지역개발기금 3,555억 29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850억 38백만원, 치수사업 368억 48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82억 93백만원, 광역교통시설 21억 29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511억 37백만원임.
- 2005년부터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이 5년간 4,090억원에서 3,555억원으로 매년 감소되어 535억원이 감축된 것으로 이는 채권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까지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 3년간 59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대비 200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진료비 등 위탁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09년도 세입이 22억원으로 전년대비 42억원(△47.6%)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광역도로사업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임.

◆ 연도별 ·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709,697	751,179	760,295	762,681	838,973
지역개발기금	408,984	368,212	273,637	257,101	355,529
의료급여기금	245,532	286,838	384,736	405,050	385,038
치수사업	36,608	49,521	39,771	33,452	36,848
경북도립대학운영	6,608	6,255	7,118	8,328	8,293
광역교통시설	11,965	10,181	9,380	4,171	2,129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	30,172	45,653	54,579	51,137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2009년도에 총 8,411억 9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389억 73백만원을 징수하고 22억 23백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음.
- 미수납 이월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 59백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15억 41백만원으로 총 22억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24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음.

3) 세출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4조 6,681억 3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조 8,132억 1백만원의 97.0%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결산내역⁷⁾중 특이사항을 보면
 - 개청이후 처음으로 부문별 1조원을 넘는 지출을 보인 사회복지 부문이 1조 1,775억 74백만원으로 총 지출액 대비 2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8,618억 72백만원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경비인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5,262억 58백만원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부문이 30억 47백만원으로 0.1%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부문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순위	부 문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비율
	총 계	4,813,201	4,668,138	
1	사 회 복 지	1,213,142	1,177,574	25.2
2	농 립 해 양 수 산	876,091	861,872	18.5
3	일 반 공 공 행 정	533,973	526,258	11.3
4	환 경 보 호	487,070	486,622	10.4
5	수 송 및 교 통	394,059	356,413	7.6

※ 총 14개 부문별 결산내역 중 상위 5개 부문만 작성

7) 종합심사보고서 『부문별 세출 결산 내역』 참조

(2) 예비비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347억 79백만원 중 경상북도 도의원 장례비 지원 외 21건에 133억 40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2억 6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7백만원임.
- 예비비 사용내역 21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9건으로 봄 가뭄대비 용수 확보 및 호우(우박)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이며, 그 다음은 6건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예방을 위한 대책 비용이며, 나머지는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이나 구상금과 도의원 영결식 비용임.
- 매년 지적인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은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미리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례를 경험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부예산을 충분히 확보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세정과 소관 「5.26~6.2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에 지출 결정액은 41억원, 지출액은 31억 55백만원을 해서 9억 45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예비비 재원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

생한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시 충분한 사전 소요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비비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3) 이월사업비 현황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 이월 26건 350억원, 사고이월 56건 301억 46백만원으로 총 82건에 652억 4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18억 95백만원(△52.4%)이 감소하였음.
-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사업조기 완성으로 이월사업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 때문이며,
- 사업기간이 장기간(1년 이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총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여 연례적으로 이월하기 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사업담당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평균	전년 대비						
84	96,724	73	79,072	88	75,183	134	137,141	82	65,246	1.7%	△52.4%

(4) 집행잔액(불용액) 현황⁸⁾

- 2009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8,132억 1백만원의 1.7%에 해당하는 798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1%인 110억 14백만원이나 감소한 규모로서,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 11백만원, 예산절감이 10억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이 131억 7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6억 54백만원, 예비비가 225억 1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축소 또는 취소)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매년 특정사업의 경우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8)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현황(5천만원 이상)』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 집행잔액(불응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9년	79,817	2,511	959	13,178	40,654	22,515
2008년	90,831	31,013	1,892	9,207	10,494	38,225

(5)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⁹⁾

-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도비 포함) 2조 785억 70백만원 중 2조 581억 87백만원(99.0%)을 집행하고, 159억 24백만원(0.8%)을 이월하였으며, 44억 59백만원(0.2%)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이 99.0%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도본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예산액(100억원)』 전액을 이월시켰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2억원)』,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평가(1억원)』 은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겼으며, 보건정책과 소관 『전염병 전문가 교육 사업』 의 경우 예산액 18백만원 중 3백만원(17.1%)만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82.9%인 15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6) 예산전용 현황¹⁰⁾

9)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10) 『예산전용 현황』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 2009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총 3건에 1억 25백만원으로 전년도 8건 2억 97백만원 대비 57.9%나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 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나,
- 당초예산 등을 편성할 때 예산의 수요를 보다 명확히 계산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전용이 의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 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금액	증감률
일반회계	8	297	3	125	△172	△57.9%

나. 특별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042억 1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546억 28백만원의 93.3%를 지출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만 2건 29억 73백만원임.
-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음.

(2) 연례적 사업비 이월 지양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부사업 『체계적인 하천정비 추진』으로 25억 7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9.4%),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세부사업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으로 4억원(예산현액 대비 100%)이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는데,
- 이는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 등 제반 이행사항과 공사기간, 용역기간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매년 관례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추경 예산 편성때 계상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

비비 지출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저출산 극복, 저소득층 등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망 구축, FTA 대응 선진 농어촌육성 및 지방행정기관이 해야 할 道民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본사업과 호우(우박)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매년 결산 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 편성 前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 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 실적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道民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09년도 경우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불용액) 전체 금액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원인별로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로 인한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284%나 증가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민간대
행사업비) 4억 34백만원, 수산진흥과 소관 연근해 어업구
조 조정(근해)사업(시설비) 8억 50백만원, 균형개발과 소관
동해안 특정지역 개발사업(연구용역비) 1억 80백만원, 지방
공항 활성화 사업(연구용역비) 2억원의 경우 예산편성 이후
전액 불용시킨 사업으로,

- 특히, 수산진흥과, 균형개발과 소관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
업을 전액 불용시켰는데 이는 예산편성 및 이월 단계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이월)한
것이 아닌지, 불용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입찰방법(지
역제한) 개선』 등 12건의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경상북도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률, 이월사업 건
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
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향
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 8. 토론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보 조 자 료

1. 이월사업 내역 / 40
 - 일반회계 / 40
 - 특별회계 / 45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 46
3.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53
4. 예산전용 내역(일반회계) / 55
5. 집행잔액(불용액) 원인별 현황 / 56
6.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 / 57
7. 채무부담행위 내역(일반회계) / 58

1. 이월사업 내역

가. 일반회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 당실과
계	35,099,969		
의정추진 역량강화 지원	36,898	용역과제선정 소위원회활동 및 사업자선정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의회사무처
도청이전신도시건설 계획수립	65,870	용역세부과제중 “추억의고향지제작” 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완료예정 : '10. 11. 23)	도청이전추진단
도본청 및 도의회청사건립 (보조)	6,500,000	신도시개발계획수립및행정업무 사전절차 이행시기 미도래	“
도본청 및 도의회청사건립 (보조)	3,414,000	신도시개발계획수립및행정업무 사전절차 이행시기 미도래	“
도본청 및 도의회청사건립 (보조)	86,000	신도시개발계획수립및행정업무 사전절차 이행시기 미도래	“
도정정책개발 및 주요현안 관리	44,250	연도내 연구용역을 완료할 수 없어 이월 (완료예정 : '10. 5. 8)	정책기획관
독도영유권 공고화 홍보사업	50,000	독도특집프로그램 촬영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어 이월	독도수호대책팀
사방사업	317,777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 최적부지 및 건축규모를 확정 후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이월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휴양림조성	2,349,950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원가심사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산림생태과학원
자연휴양림조성	26,526	자연휴양림조성시설비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종합산림문화단지 조성	18,381	사계절맞테마별 홍보물제작에 따른 용역기간부족으로 이월	“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	723,000	사업대상자변경및복원기금추가배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식품유통과
어업지도선 운영	732,000	어업지도선단체개조대상 및 근해감척어선선정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수산진흥과
어업지도선 운영	10,000	어업지도선단체개조대상 및 근해감척어선선정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가축방역사업	866,378	설계용역인찰과정 및 착공후 준공까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사업	13,000	시설비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가축방역사업	1,000	시설비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가축방역사업	100,000	시설비이월에 따른 장비구입비 이월	"
혁신도시기반시설 조성지원(보조)	3,888,150	실시설계용역, 사전환경성협의 등은 완료하였으므로 18개월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균형개발과
혁신도시기반시설 조성지원(보조)	14,731	시설비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동명-부계)	4,000,000	국지도사업의 장기계속 시행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도로철도과
왜관 가산간국지도건설	190,000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
지방도건설	6,000,000	국지도사업의 장기계속시행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울릉일주도로 건설	200,000	09년에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사업시행 연기에 따라 이월	"
공공디자인 사업	282,000	추경에 추가확보된 예산으로 입찰유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	건축지적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도시행)	5,170,058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사업물량증가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	치수방재과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계	30,145,804		
도정정책개발 및 주요현안 관리	108,080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함	정책기획관
백두대간보호지원	31,167	백두대간소득감소분지원 대상자선정 지연	산림녹지과
수목원관리운영	68,986	제2회추경시(09. 9. 8)확보된 예산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관리소
어업지도선 운영	3,992	어업지도선 개조 시설비 명시 이월에 따른 부대비 사고이월	수산진흥과
지방어항건설	649,940	동계공사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
인공어초수로조사용역	43,716	절대공기 부족	"
낙동강토속어류 산업화센터건립	263,410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로 이월	민물고기 연구센터
도지정문화재보수직영 (이양)	147,875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문화재과
도지정문화재보수직영 (이양)	461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동명 - 부계)	7,862,092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도로철도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동명 - 부계)	522,87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동명 - 부계)	33,87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가창 각남간국지도건설	434,605	환경관련 민원 제기로 인한 일부 공사지연으로 이월	"
가창 각남간국지도건설	34,452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청도 경산간국지도건설	5,919,888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
청도 경산간국지도건설	10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청도 경산간국지도건설	14,906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옥성 선산간국지도건설	3,797,440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민원 제기	일부 공사 지연	도로철도과
옥성 선산간국지도건설	34,795	시설비 이월	따른 부대비 이월	"
화서 화북간국지도건설	35,624	동절기 공사 중지	인한 절대공기 부족	이월
화서 화북간국지도건설	1,765	시설비 이월	따른 부대비 이월	"
용암 선남간국지도건설	315,511	동절기 공사 중지	인한 절대공기부족	이월
용암 선남간국지도건설	58,795	시설비 이월	따른 감리비 이월	"
용암 선남간국지도건설	60,000	시설비 이월	따른 부대비 이월	"
왜관 가산간국지도건설	3,725	설계기간 장기소요	부득이 이월	"
지방도건설	1,234,063	토지보상 협의지연	으로 부득이 이월	"
지방도건설	501,275	시설비 이월	따른 감리비 이월	"
지방도건설	137,254	시설비 이월	따른 부대비 이월	"
지방도체불용지보상	11,351	토지보상 협의지연	으로 부득이 이월	"
지하철건설사업	1,000,000	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도시행)	2,472,180	비산지구외 7개지구 보상협의 지연 및 동계시공 중지	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치수방재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도시행)	147,083	시설비 이월	따른 부대비 이월	"
낙동강프로젝트 핵심사업 추진 경비	34,000	제2회 추경시('09. 9. 8)확보된 예산으로 중앙부처 홍보지침 시달	지연으로 이월	낙동강사업팀
낙동강 기획 및 홍보 추진 경비	164,216	제2회 추경시('09. 9. 8)확보된 예산으로 중앙부처 홍보지침 시달	지연으로 이월	"
지방도유지관리	543,233	제2회 추경시('09. 9. 8)확보된 예산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이월 종합건설사업소
위험도로구조개선	126,590	제2회 추경시('09. 9. 8)확보된 예산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이월 "
교량 개체사업	191,259	제2회 추경시('09. 9. 8)확보된 예산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사리도확포장	68,359	제2회 추경시('09. 9. 8)확보된 예산으로 행정절차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사리도확포장	83,994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위험도로개량	339,190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		"
위험도로개량	1,407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위험도로구조개선	207,034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
위험도로구조개선	9,256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교량및터널개보수	261,912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교량및터널개보수	7,915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563,211	제2회 추경시(2009. 9. 8)반영된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안동소방서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6,3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4,075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1,051,713	제2회 추경시('09. 9. 8)반영된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구미소방서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18,669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6,205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10,000	청사 준공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영천소방서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4,000	2008년 명시 이월된 예산으로 청사 준공시기 미도래		"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382,088	제2회 추경시('09. 9. 8)확보된 예산으로 이상한파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상주소방서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6,93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소방청사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3,074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나. 특별회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사 유	해당실과
계	2,972,940		
체계적인 하천정비추진	2,572,940	추경예산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 PQ적격심사, 입찰공고 등 제반이행사항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치수방재과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400,000	2011년 국비확보를 위해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	에너지정책과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414,535,722	394,249,605	15,924,036	4,362,086	
새경북기획단	희망근로사업추진	72,319,925	72,319,447	0	478	
도청이전추진단	도본청및도의회 청사건립(보조)	10,000,000	0	10,000,000	0	
예산담당관실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373,637	1,048,077	0	325,560	
경제교통정책과	화물차감차보상	1,100,000	320,000	0	780,000	
정보통신산업과	정보격차및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636,438	629,809	0	6,629	
기업노사지원과	행정인턴운영	910,996	901,149	0	9,847	
"	제2기행정인턴십운영	734,000	590,121	0	143,879	
관광마케팅사업단	외국인관광객유치	40,000	39,987	0	13	
문화예술과	무대공연작품제작평가수당	20,000	17,510	0	2,490	
체육진흥과	도생활체육지도자배치 (기금)	33,136	31,392	0	1,744	
"	시군생활체육지도자배치 (기금)	1,186,792	1,128,804	0	57,988	
"	시군어르신체육활동지원 (기금)	384,552	369,854	0	14,698	
"	스포츠클럽시범사업지원 (기금)	420,700	418,360	0	2,340	
"	체육바우처시범사업지원 (기금)	204,300	167,156	0	37,144	
농업정책과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활동	94,025	91,637	0	2,388	
"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교육운영	17,580	14,122	0	3,459	
"	귀농정착지원	225,000	224,592	0	408	
쌀산업FTA대책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680,000	678,920	0	1,080	
"	창업후계농업경영인교육	215,050	187,550	0	27,500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친환경농업과	미생물제재활용병해충방제	217,500	186,778	0	30,722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651,495	5,644,357	0	7,138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원)	92,837,980	92,654,419	0	183,561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	6,229,708	6,225,041	0	4,667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821,287	746,465	0	74,822	
"	생산시설현대화(경상보조)	262,000	260,322	0	1,679	
"	생산시설현대화(자본보조)	14,300,000	14,278,666	0	21,334	
"	생산시설현대화(직접)	36,000	32,570	0	3,430	
"	과수생산기반정비	3,174,141	3,168,875	0	5,266	
"	과수원정비지원	485,822	485,744	0	78	
식품유통과	우수농산물관리(GAP) 제도운영	610,980	602,462	0	8,518	
"	농수산물식품가공산업육성	4,335,000	3,582,450	723,000	29,550	
"	양곡관리운영	144,485	143,445	0	1,040	
축산경영과	축사시설현대화	3,071,429	3,069,967	0	1,462	
"	축산분뇨처리시설	2,725,968	2,704,496	0	21,472	
"	학교우유급식지원	2,203,461	2,174,839	0	28,622	
"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	69,200	68,600	0	600	
"	닭뉴캐슬병예방약구입 (가축방역)	214,704	214,102	0	602	
"	가축방역약품구입비	2,749,324	2,745,489	0	3,835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가축방역)					
축산경영과	소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 (가축방역)	1,224,510	1,165,537	0	58,973	
"	가축방역장비지원(가축방역)	273,000	266,008	0	6,992	
"	공동방제단지원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2,040,716	1,987,619	0	53,097	
수산진흥과	연근해어업구조조정	5,700,000	5,533,106	0	166,894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수립	200,000	177,600	0	22,400	
"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	262,130	236,749	0	25,381	
수질보전과	1,4-다이옥산 배출업체 폐수처리지원(보조)	1,485,000	1,440,625	0	44,375	
산림녹지과	숲가꾸기	48,856,142	48,657,133	0	199,009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4,345,424	4,299,010	0	46,414	
"	조림사업지원	6,851,766	6,418,806	0	432,960	
"	민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	161,460	160,694	0	766	
"	조림사업	2,588,886	2,581,073	0	7,814	
"	산불방지대책지원	6,468,700	6,455,246	0	13,454	
"	사방사업	739,112	677,000	0	62,112	
"	산불방지대책	8,000	7,667	0	333	
"	등산문화증진	300,000	297,265	0	2,735	
"	산림환경보전관리	143,750	139,950	0	3,800	
"	산림병해충방제	6,865,590	6,858,136	0	7,454	
"	생활림조성관리	120,000	105,500	0	14,500	
"	인력운영비	37,180	26,545	0	10,635	
사회복지과	장애인수당지원	30,146,828	29,969,523	0	177,305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회복지과	2009년지자체복지정책평가우수 지자체특별지원금	200,000	0	0	200,000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부임	19,200	10,567	0	8,633	
여성청소년가족과	가정위탁상해보험료지원	106,684	72,511	0	34,173	
"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141,900	138,300	0	3,600	
"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41,000	37,000	0	4,000	
"	이주여성보호및폭력피해예방	22,000	21,156	0	844	
보건정책과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	44,000	38,537	0	5,463	
"	전염병전문가교육	18,240	3,120	0	15,120	
"	에이즈예방관리사업	146,692	120,555	0	26,137	
"	신종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11,250	11,000	0	250	
"	결핵예방소집단유행관리사업	60,000	30,500	0	29,500	
"	전염병환자격리치료사업	4,500	3,230	0	1,270	
"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사업 (예방접종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비)	30,625	30,422	0	203	
"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직접)	4,000	3,450	0	550	
"	금연클리닉사업추진(직접)	26,570	26,366	0	204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추진(직접)	101,412	96,112	0	5,300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추진 (직접)	70,338	67,820	0	2,518	
"	임산부및영유아 보충영양사업(직접)	7,220	6,755	0	465	
균형개발과	혁신도시기반시설조성지원	7,500,000	3,597,119	3,902,881	0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					
치수방재과	재난피해자심리관리	36,000	25,017	0	10,983	
"	재난관리평가	100,000	0	0	100,00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교육훈련지원	47,822	46,289	0	1,533	
"	노후경보시스템교체	220,000	216,492	0	3,508	
자치행정과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운영	24,100	21,575	0	2,525	
"	주민제도운영	20,000	17,728	0	2,272	
새마을봉사과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개최 (보조)	3,190,000	3,143,111	0	46,889	
방호구조과	소방장비보강(보조재원)	2,243,800	2,159,402	0	84,398	
"	사회복무요원운영등	50,943	50,453	0	490	
농업기술원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직접)	120,000	119,986	0	14	
"	농산물소득조사분석(직접)	17,800	17,793	0	7	
"	과학영농장비운영(직접)	37,200	37,172	0	28	
"	농업전문인력양성(직접)	120,300	117,998	0	2,302	
"	농업전문인력양성	862,111	859,711	0	2,400	
"	농촌현장인턴운영(직접)	752,962	708,209	0	44,753	
"	농업기계훈련사업(직접)	40,000	37,840	0	2,160	
"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 (직접)	218,480	217,545	0	935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	75,800	75,178	0	622	
"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자본)	59,200	59,198	0	2	
"	질병관리조사연구사업	18,000	17,987	0	13	
"	에이즈및성병실험실진단사업	35,000	34,903	0	97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바이러스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28,588	28,522	0	66	
"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74,500	73,442	0	1,058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사업	2,051,935	1,068,342	980,378	3,215	
"	축산물검사	478,337	467,151	0	11,186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가축방역(보조)	36,066	35,557	0	509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가축방역(보조)	50,600	49,983	0	617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가축방역(보조)	36,066	35,743	0	323	
산림환경연구원	조림사업	58,336	57,452	0	884	
"	숲가꾸기	34,320	34,181	0	139	
"	산림병해충방제	518,501	515,375	0	3,126	
"	사방사업	14,514,200	14,165,215	317,777	31,208	
"	산불방지진입도로	372,240	357,642	0	14,598	
"	산림서비스증진	33,515	33,021	0	494	
"	산불방지대책	50,000	49,858	0	142	
"	묘목생산	35,230	34,022	0	1,208	
수목원관리소	수목원숲가꾸기	135,160	128,064	0	7,096	
"	수목원조림사업	175,010	171,982	0	3,028	
"	수목원산불방지대책	9,871	9,654	0	217	
"	수목원산림서비스증진	83,788	83,353	0	435	
"	수목원산림병해충방제	13,000	12,987	0	13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금 액				비고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소	산불진화진입도로	376,000	362,062	0	13,938	
"	사방사업	12,691,512	12,587,732	0	103,781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소	숲가꾸기	135,160	126,137	0	9,023	
"	산불진화진입도로	282,000	268,366	0	13,634	
"	사방사업	13,298,139	13,263,189	0	34,950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도립군립공원공공근로사업 (자연환경보호)	141,340	140,987	0	353	
산림생태과학원	산림서비스증진	83,789	83,763	0	26	
"	산림병해충방제	13,000	12,976	0	24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	60,000	59,939	0	61	
"	박물관에너지자원	930,000	921,600	0	8,400	
"	조림사업	116,674	111,114	0	5,560	
"	숲가꾸기	179,784	178,900	0	885	
"	임도시설(테마산길조성)	100,000	99,372	0	628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60,000	59,451	0	549	
어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보조)	879,103	635,998	0	243,105	

※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음.

3.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예비비 예산 : 34,779,468천원
- 지출 결정 : 13,340,007천원
- 집행액 : 12,262,769천원
- 잔액 : 1,077,238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집행액	집행사유	해당실과
계	12,262,769		
의정활동전문성장화	6,390	도의원(故나규택) 영결식	의회사무처
발작물가뭄 대책지원	830,306	봄 가뭄대비 용수확보	친환경농업과
우박피해 복구지원	177,525	5. 26 / 6. 2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친환경농업과
우박피해 복구지원	36,825	7. 2 우박피해 복구비	친환경농업과
호우피해 복구지원	25,650	7. 21 호우피해 복구비	친환경농업과
우박피해 복구지원	6,525	10. 17 우박피해 복구비	친환경농업과
모내기대비 용수확보대책	990,000	봄 가뭄대비 용수확보	농촌개발과
우렁쟁이 피해복구지원	139,956	이상조류로 인한 우렁쟁이 피해 복구비	수산진흥과
가뭄해소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	4,239,000	겨울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비	수질보전과
공공수역수질관리업무추진	445,500	1, 4다이옥산 배출업체 폐수위탁처리비 지원	수질보전과
신종전염병 예방지원사업	740,000	10월~11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예방	보건정책과
신종전염병 예방지원사업	460,000	10월~11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예방	보건정책과
신종전염병 예방활동사업	36,000	10월~11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예방	보건정책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집행사유	해당실과
전염병관리 사업추진	8,000	10월~11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예방	보건정책과
하천정비 업무추진	756,124	2002. 8. 31 태풍 "루사" 북안천조암교 부근 제방붕괴에 따른 인접공장 침수피해 민사소송 손해 배상금	치수방재과
재해예방 및 복구추진	36,600	7. 11 ~ 7. 15 호우피해 복구비	치수방재과
지방도 유지관리	53,318	2002. 8. 31 태풍 "루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방도906호선내 횡배수관 역류로 인한 건물침수 피해 관련 민사소송 손해 배상비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 유지관리	25,492	2006. 1. 1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 지방도 903호선내 교통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민사소송 구상금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 유지관리	40,000	칠곡군 지천면 소재 지방도 923호선내 노면결빙에 의한 교통사고 화해비(손해배상)	종합건설사업소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3,154,923	5. 26 / 6. 2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세정과
밝고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12,635	10월~11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예방	회계계약심사과
긴급대응능력 확보	42,000	10월~11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예방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4. 예산전용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해당실과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총3건)			112,806,000	125,000	125,000		
새경북기획단	희망근로사업추진	201-01 사무관리비	465,000	60,000		11. 6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범사업인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사업 등 서민친화적 사업의 부족한 재료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용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8,596,000		60,000		
에너지정책과	지역에너지교육 및 홍보추진	202-03 국외업무 여비	15,000	15,000		11. 6	지식경제부에서 신종플루 감염 확대 등으로 사업계획이 해외연수계획을 취소하고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
	지역에너지교육 및 홍보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20,000		15,000		
균형개발과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228,000	50,000		9. 21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활력증진 사업계획 변경(당초 : 지역혁신협의회운영지원 → 변경 : 상주등시 뚝배기 선별기 지원사업)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15,482,000		50,000		

5. 집행잔액(불용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사 유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103,478,651	79,816,681	23,661,970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311,102	2,511,465	799,637
예산절감	985,729	958,729	27,000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33,543,478	13,178,185	20,365,293
보조금집행잔액	42,019,962	40,653,593	1,366,369
예 비 비	23,618,380	22,514,709	1,103,671

6.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해당실과	통계목	금액	사유
계		2,150,721	
새경북기획단	민간경상보조	50,000	청년영어강사를 당초 50명 모집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 교과부 학습보조 인턴교사 배치로(월 120만원) 교동이 편리한 지역으로 강사 이탈(선발 50명 → 현장 배치 31명)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65,514	공통경비로서 예산절감 위해 실과지원 강력 억제
"	민간경상보조	57,500	공통경비로서 예산절감 위해 실과지원 강력 억제
"	사회단체보조금	136,397	심의결정액 외의 공통경비로서 예산절감 위해 실과지원 강력 억제
산림녹지과	자치단체자본보조	252,000	한미FTA 타결 후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됨
농업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	사업자 사업포기
친환경농업과	민간대행사업비	434,000	한미FTA국회 미비준(국비 미배정)
농촌개발과	자치단체자본보조	168,000	농식품부 사업승인 취소(기본계획 미수립)
관광마케팅사업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00	신종플루로 인한 축제 취소(상주,청도,청송)
문화예술과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경산문화원 건립 포기
균형개발과	민간위탁금	75,000	하반기 행사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	연구용역비	180,000	동해안권특정지역 개발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시기미도래
"	연구용역비	200,000	국도해양부 울릉공항 개발타당성 용역 발주에 따른 중복투자 및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의용소방대지원경비	82,310	소방활동 보조임무 수행 중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발생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지급 사례 미발생)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해당실과	통계목	금액	사유
계		145,674	
균형개발과	기타부담금	145,674	사업취소요청 승인, 환급처리에 따른 상계 처리로 국고귀속분 미지급

※ 세부사업별(통계목) 5천만원 이상만 작성함.

7. 채무부담행위 내역(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해당실과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일자	채무부담 행위 승인액	채무부담 행위액	상환조건	채무부담 행위사유
계				28,983	28,983		
수산진흥과	지방어항건설	시설 및 부대비	2009. 9. 8	983	983	2010년 상환	지방어항시설 조기마무리
도로철도과	지방도건설	시설 및 부대비	2008. 12. 16	15,000	15,000	2010년 상환	지방도사업 조기마무리
종합건설 사업소	사리도 확포장	시설 및 부대비	2008. 12. 16	7,700	7,700	2010년 상환	지방도사업 조기마무리
종합건설 사업소 북부지소	사리도 확포장	시설 및 부대비	2008. 12. 16	4,100	4,100	2010년 상환	지방도사업 조기마무리
"	교량 및 터널개보수	시설 및 부대비	2008. 12. 16	1,200	1,200	2010년 상환	지방도사업 조기마무리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0.10.26(화)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경 상 북 도 의 회

목 차

I. 소관부서
II. 심사경과
III. 제안이유
IV.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2. 세입세출외 결산 현황
V.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총괄부문
2. 세입부문
3. 세출부문
VI. 질의 및 답변요지
VII. 토론요지
VIII. 심사결과
IX. 소수의견의 요지
X. 기타 필요한 사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I.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I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9. 30, 경상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0. 10. 15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10. 20 : 상정·질의·토론의결)

III. 제안이유

-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괄

-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109억 6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3조 442억 2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3조 623억 6천 7백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2조 7,400억 5천 9백만원으로
- 결산차액(잉여금)은 3,223억 7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3,044,202	3,062,367	2,740,060	322,3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 : 189,805 ◦ 이 월 금 : 132,502 · 명 시 이 월 : 56,689 · 사 고 이 월 : 75,813 ◦ 계 속 비 이 월 : 0 ◦ 국고보조금잔액 : 0

-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223억 7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325억 2백만원을 제외하고 1,898억 5백만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함. 이는 2008년도 순잉여금 1,149억 7천 4백만원 대비 65%인 748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09 잉여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세 계 잉여금 (C=A-B)	이월액 (D)	계속비 이월 (E)	국고보조금 잔액 (F)	순잉여금 (C-D-E-F)	2008년도 순잉여금
계	3,062,367	2,740,060	322,307	132,502	0	0	189,805	114,974

나. 세 입

□ 세입예산현액은 3조 442억 2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3조 626억 2천 1백만원이며, 이 중 3조 623억 6천 7백만원은 수납되었고, 3천 2백만원은 불납 결손되었으며, 2억 2천 3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불납 결손액 3천 2백만원은

-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1천 4백만원
- 잡수입 1천 8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시효완성 및 학생의 자퇴학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2억 2천 3백만원은

- 교수-학습활동수입 5백만원
- 자산수입 3천 2백만원
- 잡수입 등 1억 8천 6백만원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자산수입, 잡수입의 미수납액은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및 재산압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자체수입은 698억 9천 8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2.3%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	297억 3천 4백만원
○ 행정 활동 수입	2억 1천만원
○ 자 산 수 입	221억 5천 4백만원
○ 이 자 수 입	149억 5천 7백만원
○ 잡 수 입	28억 4천 2백만원임

차입은 1,563억 2천 7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5.1%이고,

이월금은 3,259억 3천 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0.6%임.

다. 세 출

□ 세출예산현액은 3조 442억 2백만원으로서

예산액 2조 8,332억 4천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109억 6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2조 7,400억 6천만원은 지출(90.0%)하였고, 1,325억 2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4.4%)하였으며, 1,716억 4천만원은 불용(5.6%)처리 하였음.

◆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2,833,241	210,961	3,044,202	2,740,060	132,502	171,640

◆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지출대비 구성비
합계	3,044,202	2,740,059	89.3	100.0
1. 인건비	1,204,506	1,186,860	98.5	43.3
2. 물건비	101,193	91,196	90.1	3.3
3. 이전지출	188,471	187,061	99.3	6.8
4. 자산취득	509,437	332,868	65.3	12.2
5. 상환지출	13,670	13,056	95.5	0.5
6. 전출금등	949,107	929,018	97.9	33.9
7. 예비비및기타	77,818	0	0.0	0.0

⇒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면

○ 인 건 비	174억 2천 3백만원
○ 물 건 비	94억 7천 6백만원
○ 이 전 지 출	13억 6천 4백만원
○ 자 산 취 득	588억 3천만원
○ 상 환 지 출	6억 1천 4백만원
○ 전 출 금 등	61억 1천 5백만원
○ 예비비및기타	778억 1천 8백만원이며,

⇒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315억 3천만원
○ 예산 절감	25억 4천 6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842억 6천만원
○ 집행잔액	533억 3백만원임

◆ 불용액 내역(성질별) ◆

(단위 : 백만원,%)

성질별	예산액	불용액	원인별내역				불용율
			계획변경및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계	3,044,202	171,640	31,531	2,546	84,259	53,304	5.6
인건비	1,204,506	17,423	43	12	76	17,292	1.4
물건비	101,193	9,476	2,412	602	904	5,558	9.4
이전지출	188,471	1,364	208	26	410	720	0.7
자산취득	509,437	58,830	27,329	1,422	3,994	26,085	11.5
상환지출	13,670	614		-	-	614	4.5
전출금등	949,107	6,115	1,539	484	1,057	3,035	0.6
예비비및기타	77,818	77,818		-	77,818	0	100.0

◆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별	예산액 ①	예산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불용액 ⑥=③- ④-⑤	불용 율 ⑥/③
합 계	2,833,241	210,961	3,044,202	2,740,059	132,503	171,640	5.6
인적자원운용	1,446,369	366	1,446,735	1,426,104	21	20,610	1.4
교수-학 습 활 동 지 원	237,381	7,488	244,869	222,990	15,534	6,345	2.6
교육격차해소	99,812	0	99,812	95,312	3,180	1,320	1.3
보 건/급 식/ 체 육 활 동	40,580	4,331	44,911	40,191	3,897	823	1.8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565,638	19,652	585,290	576,048	6,178	3,064	0.5
학교교육여건 개 선 시 설	252,438	117,229	369,667	252,941	90,683	26,043	7.0
평 생 교 육	6,530	33	6,563	6,135	108	320	4.9
직 업 교 육	3,400	0	3,400	3,332	0	68	2.0
교육행정일반	40,019	5,095	45,114	38,394	1,923	4,797	10.6
기관운영관리	45,358	58,485	103,843	63,130	10,979	29,734	28.6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16,181	0	16,181	15,482	0	699	4.3
예비비및기타	79,535	-1,718	77,817	0	0	77,817	100.0

라. 예비비

- 2009회계연도 예비비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비로서 지출결정액은 17억 1천 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천 6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잔 액	사 유
합계	1,718	1,616	-	102	
학교보건운영관리	490	490	-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온측정기 및 손소독제 구입
교무및행정업무보조	170	156	-	14	•보건인턴 인력지원
학교보건운영관리	1,058	970	-	88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및 손소독제 구입

마.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바. 예산이체¹¹⁾

- 예산이체는 2009년 9월 1일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업무이관 및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65건 318억 7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사. 예산전용 : 해당사항 없음.

11) 『예산이체 상세내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39~1073쪽 참조

아. 계 속 비 : 해당사항 없음.

자. 이 월 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3조 442억 2백만원 중 1,325억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이며 그 내역은

- 명시이월 55건에 566억 8천 9백만원(42.8%)
- 사고이월 121건에 758억 1천 3백만원(57.2%)임.

◆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이 월 액				비 율 (%)
	계	계 속 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3,044,202	132,502	-	56,689	75,813	4.4

2. 세입세출 외 결산 현황

가. 채권 및 채무

1) 채 권

- 전년도말 채권액 989억 6천 4백만원보다 3억 6천 3백만원이 증가된 993억 2천 7백만원으로서
- 잡수입 2천 9백만원, 대여장학금 3억 5천 6백만원,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수업료 7백만원, 재산수입(임대료) 2천만원이 감소되었음.

◆ 채권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계	98,964	15,745	15,381	99,326	
원어민교사전세자금	81	-	-	81	
수업료	11	3	9	5	
잡수입	104	55	26	132	
대여장학금	96,698	15,650	15,294	97,053	
사무실임대료	120	-	-	120	
임차보증금	1,845	5	-	1,850	
재산수입(임대료)	105	32	52	85	

2) 채 무

- 채무액은 전년도말 채무액 1,871억 2천만원보다 3,786억 8천 8백만원이 증가된 5,658억 8백만원임.

◆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자	비 고
		계	채 무 발생액	상 환· 소멸액			
합 계	187,120	378,688	394,171	15,482	565,808	-	
차입금	-	156,327	156,327	-	156,327	-	
BTL	187,120	222,362	237,844	15,482	409,481	-	

나. 재 산

1) 공유 재산

-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2,900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된 4조 298억 6천 9백만원이며 내역을 살펴보면
 - 행정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2,859억 5천 2백만원이 증가된 3조 9,642억 8천 6백만원이며
 -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40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된 655억 8천 4백만원임.

◆ 공유재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계	3,739,834	290,035	507,024	216,988	4,029,869
행정재산	3,678,334	285,952	471,976	186,024	3,964,285
일반재산	61,500	4,084	35,049	30,965	65,584

2) 물품

-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229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된 2,535억 7천 4백만원으로서 전기·통신기기 등 10종, 49,809점 구입에 따른 물품 현재액임.

◆ 물품 현황 ◆

(단위 : 수량/점, 백만원)

품종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증감액				당해년도 현재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전기·통신 기기 등 10종	46,223	230,632	9,685	58,994	6,279	36,052	49,809	253,574

V.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분

□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109억 6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3조 442억 2백만원이며

세입결산은 3조 626억 2천 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623억 6천 7백만원을 수납(99.9%)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2억 5천 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442억 2백만원의 89.3%인 2조 7,400억 6천만원임.

- 따라서 세입 및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3,223억 7백만원으로 이월금 1,325억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98억 5백만원임.

2. 세입부분

□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수입과(전체 예산 대비 82.0%) 차입(전체예산 대비 5.1%) 및 전년도 이월금은(전체예산대비 10.6%) 100% 수납

되었고,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전체예산대비 2.3%) 99.9% 수납되어 전체 징수율은 99.9%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징수율 (③/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9년	3,044,202	3,062,621	3,062,367	99.9	32	223
2008년	2,873,724	2,920,619	2,920,389	99.9	10	220

- 도교육청의 수납액은 예산현액 3조 442억 2백만원에 비하여 181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3조 623억 6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 증가하였음.
-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재무보고서¹²⁾를 살펴보면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고, 수업료 등 자체 재원이 경미하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4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자체세입 중 매년 발생하는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은 전체 예산 중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12) 재무보고서 9page.

3. 세출부문

□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예산현액 3조 442억 2백만원의 90.0%인 2조 7,400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041억 4천 3백만원으로 내역은 2010년도 이월액 1,325억 2백만원(이월율 4.4%), 불용액 1,716억 4천만원임(불용율 5.6%).

◆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2009년	3,044,202	2,740,060	90.0	132,502	4.4	171,640	5.6
2008년	2,873,724	2,565,524	89.3	210,962	7.3	97,238	3.4
2007년	2,540,012	2,346,472	92.4	95,825	3.8	97,715	3.8
2006년	2,394,612	2,233,115	93.2	105,130	4.4	56,367	2.4

□ 불용액에 대하여

-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6%인 1,716억 4천만원으로서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315억 3천 1백만원, 예산절감 25억 4천 6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842억 6천만원, 집행잔액 533억 4백만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744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금년 불용액은 전년에 비하여 76.5%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과 수요예측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불용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미달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생	집행 잔액
2009	3,044,202	171,640	5.6	31,531		2,546	84,260	53,304
2008	2,873,724	97,238	3.4	7,260		1,645	57,754	30,579
2007	2,540,012	97,715	3.8	19,939	4	2,475	43,908	31,389
2006	2,394,612	56,367	2.3	7,618	4	1,346	18,421	28,978
2005	2,271,871	40,636	1.8	8,217			7,436	24,206

- 또한, 불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74억 2천 3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을 비교하면 불용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건비는 교육재정의 세출내역 중 비율이 가장 높으나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여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에 현원기준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원활한 사업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인건비 불용액 발생추이◆

(단위 : 백만원)

성질별	예산액	불용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율
			계 획 및 취 소	예 산 절 감	지 급 유 미 발 생	집 행 잔 액	
2009	1,204,506	17,423	43	12	77	17,292	1.4
2008	1,255,409	16,028	3	11	25	15,989	1.3
2007	1,183,885	12,555	-	-	56	12,499	1.0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 2009년도 이월액은 1,325억 2백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4.4%의 규모로 지난해 2,109억 6천 2백만원보다 37.2% 감소한 규모임.
-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51건 566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58건 1,224억 7천 7백만원보다 53.7%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지방재정법 제50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며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전년에 비하여는 건전한 재정운용 실태를 보이고 있으나,
-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소요일수가 부족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 사고이월 사업은 121건 758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130건 884억 8천 5백만원에 비하여 15.3%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제도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므로,
- 향후에는 예산 편성전에 사업의 사전 이행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편성 및 사업진행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월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년 도	예산 현액	이 월 액			비 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09	3,044,202	132,502	56,689	75,813	4.4
2008	2,873,724	210,962	122,477	88,485	7.3
2007	2,540,012	95,825	39,424	56,401	3.8

□ 전년도 이월액 재이월 및 과다불용에 대하여

-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중 영어교육활성화 사업비, 경주공고 배수로설치 사업비 및 영덕청도 교육청 신축 사업비를 전액 불용하는 등 불용 또는 이월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이 16건 863억 2백만원이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액 집행내역13)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 관	사업명	명시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불용액	불용율
	계		86,302	26,305	13,641		46,357	
1	교육정책과	원어민원격화상강의	15	-	-	-	15	100.0
2	"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운영	115	38	-	-	77	66.7
3	총 무 과	학교전자문서시스템 구축	4,452	79	1,920	43.1	2,453	55.1
4	교육시설과	전기과실습동증축 (흥해공고)	4,506	2,072	2,094	46.5	340	7.5
5	"	기숙형공립고 기숙사신축	43,535	21,493	5,723	13.1	16,319	37.5
6	"	배수로설치(경주공고)	47	-	-	-	47	100.0
7	"	(가칭)경상북도학생 해양수련원신축	22,370	738	-	-	21,632	96.7
8	포항교육청	다목적강당증축 (달전초)	980	30	950	96.9	-	0.0
9	경주교육청	예절교육관증축설계 (경주여중)	57	-	-	-	57	100.0
10	김천교육청	급식소증축(금릉초)	987	558	430	43.5	0	0.0
11	안동교육청	(가칭)복주유치원신설	1,896	616	1,260	66.4	20	1.1
12	경산교육청	청사매각감정평가 수수료	17	-	-	-	17	100.0
13	의성교육청	다목적강당증축 (의성초)	1,051	-	948	90.2	103	9.8
14	영양교육청	다목적강당증축 (영양초)	998	681	316	31.6	1	0.1
15	영덕교육청	청사신축(영덕교육청)	1,359	-	-	-	1,359	100.0
16	청도교육청	청사신축(청도교육청)	3,917	-	-	-	3,917	100.0

13) 표설명 : 이월·불용 30%이상 사업

- 또한 2008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중 이서고 생활관개축사업이 전액 불용되고, 영해고 생활관부지 및 형곡고 하천 및 구거부지 매입 비용의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바,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예산집행 시에는 각 단위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해당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사고이월액 집행내역14)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관	세부사업	사업명	사고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1	학교지원과	사립학교 시설비지원	생활관개축 (이서고)	900	0	900	100.0
2	재무정보과	학교증개축	영해고생활관 부지매입	68	11	57	83.8
3	재무정보과	학교증개축	형곡고하천 및구거부지매입	94	56	38	40.5

□ 예산편성 후 미집행에 대하여

-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도의 교육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자체수입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1천만원 이상 전액 불용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13건 286억 3천 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14) 표 설명 : 불용 40%이상 사업

-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날수록 예산을 사장시키고 필요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드시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천만원 이상 전액 불용 사업비 조서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28,636			28,636	
1	교육정책과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14	-	-	14	교과부 화상강의 사업 메뉴얼 배포 계획에 따른 사업취소
2	학교지원과	이서고 생활관 개축비	900	-	-	900	재단내부사정으로 설계 용역 중단 및 대응투자 지연으로 집행불가
3	교육시설과	학생해양수련원 신축 시설비	21,358	-	-	21,358	부지매입지연으로 집행불가
4	"	학생해양수련원 신축 감리비	142	-	-	142	부지매입 지연으로 집행불가
5	"	경주공고 배수로 설치	47	-	-	47	공사중 문화재가 출토되어 집행불가
6	경주교육청	경주여중 예절교육관 증축 설계비	57	-	-	57	예절교육관 증축시설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설계용역 취소

구분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7	구미교육청	화랑문화제 운영비	15	-	-	15	신종플루 확산방지 관련으로 행사 취소
8	경산교육청	청사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6	-	-	16	구청사 활용계획으로 감정평가 불필요
9	"	학예 행사 운영비	12	-	-	12	신종플루 확산방지 관련으로 행사 취소
10	영덕교육청	영덕 교육청사 신축비	2,118	-	-	2,118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11	청도교육청	청도 교육청사 신축비	3,917	-	-	3,917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12	상주교육청	학내전산망 구축	20	-	-	20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으로 인한 집행불필요
13	예천교육청	학내전산망 구축	20	-	-	20	IP-TV관련 통신사업자가 장비 무상 대여로 집행 불필요

□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 경북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이상태, 위원 8명)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출¹⁵⁾하였음.
-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15) 결산검사 의견서 13~23page

◆ 결산검사 시정·개선 사항 ◆

구분	시정 및 개선 사항	해 당 부 서
1	영어타운 운영 관련 효율성 제고	교육정책과
2	특수교육대상자의 예산지원 강화	초등교육과 외1
3	위탁급식 직영전환학교 목적교부금 예산편성 부적정	체육건강과 외1
4	비정규직 직원의 점진적 정규직화 방안 강구 미흡	교육정책과 외6
5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검토	학교지원과
6	계약(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부적정	재무정보과
7	공유재산(폐교) 관리 방안 개선	재무정보과
8	시설공사 자재 구입시 예산절감 대책	교육시설과 외1

V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0. 11. 16(화) ~ 11. 25(목) : 10일간

3. 대상기관 및 현지확인 대상

- 감사대상 : 64개 기관

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 1

나. 경상북도 : 32 (본청 14, 직속기관 및 사업소 18)

다. 경상북도교육청 : 19 [본청(직속기관 포함) 7, 시군교육청 12]

라. 지방공기업 : 4(의료원 3, 개발공사1)

마. 도 출자 및 출연법인 : 8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등

4.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기관 및 현지확인

구 분	감 사 대 상 기 관			현지확인
	계	본 청	소속기관등	
계	64	15	49	
의회운영 위원회	1		○ 의회사무처	
기획경제 위원회	10	○ 공보관실 ○ 미래전략기획단 ○ 기획조정실 ○ 일자리경제본부 ○ 투자유치본부	○ 경상북도개발공사 ○ 경상북도교통연수원 ○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주)경북통상	
행정보건 복지위원회	9	○ 감사관실 ○ 보건복지여성국 ○ 행정지원국	○ 지방공무원교육원 ○ 경북도립대학 ○ 노인전문간호센터 ○ 포항의료원 ○ 김천의료원 ○ 안동의료원	
문화환경 위원회	10	○ 문화체육관광국 ○ 환경해양산림국	○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포함) ○ 산림환경연구원 ○ 산림생태과학원 ○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 (재)경주세계문화엑스포 ○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 (재)한국국학진흥원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구 분	감 사 대 상 기 관			현지확인
	계	본 청	소속기관	
농 수 산 위 원 회	7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 축산기술연구소 ○ 가축위생시험소(동부·북부지소) ○ 생물자원연구소 ○ 성주과채류시험장 ○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건설소방 위 원 회	8	○ 도청이전추진단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 건설도시방재국	○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포함) ○ 경상북도 소방본부 ○ 경산소방서 ○ 문경소방서 ○ 영천소방서	
교 육 위 원 회	19	○ 도 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연구원 ○ 경상북도교육연수원 ○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 화랑교육원 ○ 경상북도과학교육원 ○ 경상북도도립도서관 (구미, 안동, 상주) ○ 시군교육청(12개소)	

나. 감사위원회 편성

(1)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감사반 편성	사무보좌
11.23(화) 15:00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 회 의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장 윤 창 욱 ○ 감사위원 이정호, 강영석 구자근, 김명호 김하수, 김희원 나기보, 박권현 박병훈, 서정숙 이경임, 이영식 정영길, 황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주 근 호 ○ 지방행정주사 이 준 희 ○ 지방행정주사보 김 명 진 ○ 속 기 사

(2) 기획경제위원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반편성	사무보좌
11.16(화) 11:00	○ 공보관실,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 회 의 실	○ 감사위원장 장 경 식	○ 전문위원 신 재 걸
11.17(수) 11:00	○ 미래전략기획단 ○ 투자유치본부	"	○ 감사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김 종 태
11.18(목) 11:00	○ 일자리경제본부	"	황이주, 김세호 김희수, 도기욱	○ 지방행정주사 김 소 일
11.19(금) 11:00	○ (재)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 (주)경북통상	수감기관	박성만,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 속 기 사
11.22(월) 11:00	○ 경상북도 개발공사	"	한혜련, 황상조	
11.23(화) 11:00	○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		
11.24(수) 11:00	○ (재)경북하이 브리드부품연구원	"		
11.25(목) 11:00	○ 감사결과정리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반편성	사무보좌
11.16(화) 11:00	○ 감사관실 ○ 보건복지여성국	행정보건복지위 회 의 실	○ 감사위원장 권 영 만	○ 전문위원 김 지 섭
11.17(수) 11:00	○ 경북도립대학 ○ 행정지원국	"	○ 감사위원 김하수, 구자근 김영식, 김종천 나현아, 송필각 이경임, 채옥주	○ 정책연구관 조 영 진
11.18(목) 11:00	○ 공무원교육원 ○ 노인전문간호센터	수감기관		○ 지방행정주사 오 상 철
11.19(금)	○ 감사결과정리			○ 지방행정주사보 홍 성 찬
11.22(월) 11:00	○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수감기관		○ 속 기 사
11.23(화) 11:00	○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		
11.24(수) 11:00	○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11.25(목)	○ 감사결과정리			

(4) 문화환경위원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반편성	사무보좌
11.16(화) 11:00	○ (재)한국국학진흥원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수감기관	○ 감사위원장 장 세 현 ○ 감사위원 이영식, 김기홍 김말분, 김창숙 박병훈, 배수향 이시하, 이정호 전인철, 전찬걸	○ 전문위원 김 재 탁 ○ 정책연구관 김 종 호 ○ 지방행정주사 정 연 철 ○ 지방행정주사보 김 상 현 ○ 속 기 사
11.17(수) 11:00	○ 보건환경연구원 ○ (재)경주세계문화엑스포	수감기관		
11.18(목) 11:00	○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수감기관		
11.22(월) 11:00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환경회의실		
11.23(화) 11:00	○ 환경해양산림국	문화환경회의실		
11.24(수) 11.25(목)	○ 감사결과 정리			

(5) 농수산위원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감사반편성	사무보좌
11.16(화) 11 : 00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농수산위 회 의 실	○ 감사위원장 이 상 용 ○ 감사위원 박권현, 강영석 김대호, 나기보 박기진, 변우정 이왕식, 정상진 최학철, 한창화	○ 전문위원 예 경 해 ○ 지방농업사무관 홍 예 선 ○ 지방행정주사 김 형 현 ○ 지방행정주사보 도 은 영 ○ 속 기 사
11.17(수) 11:00	○ 성주과채류시험장 ○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수감기관		
11.18(목) 11:00	○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 생물자원연구소	"		
11.19(금) 11:00	○ 축산기술연구소 ○ 봉화고냉지약초 시험장	"		
11.22(월) 11:00	○ 농수산국	농수산위 회 의 실		
11.23(화) 11:00	○ 농업기술원	"		
11.24(수) 11:00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		
11.25(목)	○ 감사결과 정리			

(6) 건설소방위원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감사반편성	사무보좌
11.16(화) 11:00	○경산소방서	경산소방서 회 의 실	○감사위원장 고 우 현 ○감사위원 김명호, 곽광섭 김수용, 김희원 윤성규, 이용진 장두욱, 장영석 한재석, 홍진규	○전문위원 구 동 서 ○정책연구관 강 창 모 ○지방행정주사 안 민 ○지방행정주사보 이 경 희 ○속 기 사
11.17(수) 11:00	○문경소방서	문경소방서 회 의 실		
11.18(목) 11:00	○영천소방서	영천소방서 회 의 실		
11.19(금) 11:00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포함)	종합건설사업소 회 의 실		
11.20(토) ~11.21(일)	○휴 회			
11.22(월) 11:00	○도청이전추진단	건설소방위 회 의 실		
11.23(화) 11:00	○낙동강살리기사업단	"		
11.24(수) 11:00	○건설도시방재국	"		
11.25(목) 11:00	○소방본부	"		

(7) 교육위원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감사반편성	사무보좌
11.16(화) 11:00	○도교육청(본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위원장 김영기 ○감사위원 서정숙, 김원석 박태환, 심정규 이달, 최우섭 추재천, 홍광중	○전문위원 이진오 ○교육행정사무관 박종활 ○교육행정주사 최상수 ○지방행정주사 정진욱 ○교육행정주사보 김병훈 ○속기사
11.17(수) 11:00	○고령·성주·철곡 교육지원청	성주교육 지원청		
11.18(목) 11:00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9(금) 11:00	○포항·영덕·울릉 교육지원청	포항교육 지원청		
11.20(토) ~11.21(일)	○감사결과정리			
11.22(월) 11:00	○군위·청송·영양 교육지원청	청송교육 지원청		
11.23(화) 11:00	○영주·봉화·울진 교육지원청	봉화교육 지원청		
11.24(수) 11:00	○도교육청(본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25(목)	○감사결과정리			

선 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 ○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 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월 일

기관명 :

○○○장 ○ ○ ○ (인)

□ 동의안

-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의안 번호	15
----------	----

제 출 일 자: 2010. 8

제 안 자: 경상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트렌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그린카 부품 핵심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서두르고, 부품산업 집적화 기반구축 및 글로벌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 18조 규정에 의거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재단법인 설립계획 심의안건을 의안으로 상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법인 명 칭 :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 법인소재지 :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
- 설립자본금 : 100백만원
- 임 원 : 15명(이사 13, 감사 2)
- 주요사업
 - 그린카부품 실용사업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대경자동차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지원사업
 - 전기차용 소음제어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사업
 - 부품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보육,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 수행과 용역사업 등

3.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 붙임

4.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법인설립의 보고 등)

① 도지사는 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참고자료

-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조직도 : 붙임1
-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정관안 : 붙임2
- 세부사업 계획 : 붙임3,4 참조

[새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

□ 주 문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트렌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그린카 부품 핵심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서두르고, 부품산업 집적화 기반구축 및 글로벌 자동차 부품·소재산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 18조 규정에 의거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재단법인 설립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의 결 사 항

- 법인명칭 :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 법인소재지 :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 설립자본금 : 100백만원
- 임 원 : 15명(이사 13, 감사 2)
 - 당연직(6) : 경상북도지사, 경산시장, 지식경제부 담당과장, 경상북도 사업담당 실국장, 대구광역시 사업담당 실국장, 대경권그린카부품 진흥원장
 - 선임직(7) : 관계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가 임명
 - 감 사(2) : 경상북도 소관업무담당과장, 공인회계사

○ 목적사업

- 그린카 부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 그린카 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지원사업
-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 그린카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 그린카 부품산업 관련 각종단체 및 협의회 운영
- 그린카 부품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기획 및 조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붙임1]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조직도

□ 조직 및 인원

○ 조직



○ 인원 : 10명(원장, 팀장 3, 팀원 6)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그린카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부품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과의 지역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그린카 부품산업 관련 인프라구축 및 지원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그린카 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유치 및 육성·지원사업
4.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5. 그린카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6. 그린카 부품산업 관련 각종단체 및 협의회 운영
7. 그린카 부품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기획 및 조사
8.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이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 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송입 등으로 구성하며 재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산의 평가) 법인 재산의 평가는 취득 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의한다.

제8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 기관 출연금, 보조금,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등)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구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각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다음년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3조 예산 및 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보고서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실적 및 수지결산서
4.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5. 기타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장 위원회 구성 운영

제1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인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원장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경상북도지사
2. 경산시장
3. 지식경제부 담당과장
4. 경상북도 사업담당 실국장
5. 대구광역시 사업담당 실국장
6.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장

③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관계분야 전문인사 중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 2인 중 1인은 경상북도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원장 및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 당연직감사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을 상실했을 때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③ 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 궐위시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재단의 특별한 사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임

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임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또는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두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 없이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이사장·원장·이사의 직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원장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장이 궐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가 그 기재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구와 감사결과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진술 또는 발언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민법상 무능력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절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구성) ①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 ·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중요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제19조 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연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재단과 이사장 또는 이사 본인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회의록)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되 이사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 및 출석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절 해 산

제28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경상북도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한다.

제5장 조 직

제1절 정 원

제30조(직제 및 정원 등) 법인의 직제, 정원,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임 면

제31조(직원의 임면 등)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법인은 필요한 경우 참여 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 또는 소속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인의 조직, 정원,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공고의 방법) 법령과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조례, 주무관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법인 설립 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사업연도) 이 법인은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별표 1】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00백만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소 재 지	번 지	지 목	면 적	평 가 액
출연금					100백만원

[붙임3]

자동차 부품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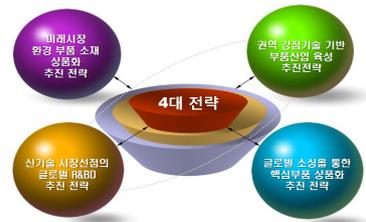
대경권 친환경 자동차부품·소재 업체의 차세대 핵심기술력 확보와 고부가 상용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성

- 친환경·고효율의 차세대 자동차에 적용가능한 친환경 첨단 부품소재 R&D 개발과 기업지원의 필요성 증대
- 지역부품산업의 융복합 기술활용과 신제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품산업 구조전환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 '13년(3년간)
- 사업비 : 124억원(국비 90, 지방비 34)
- 주관기관 : 경북도, 대구시, 경산·영천시
 - ※ 참여기관 : 영남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경북IP 등
- 사업내용
 - 부품소재 상용화, 구조전환 및 고도화, 맞춤형 근접기술 지원
 - 품질관리 정보제공, 부품인증사업 등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비고
합계	36	41	44	124	
국비	26	30	34	90	
지방비	10	11	13	34	

향후계획

- 부품소재 중소기업 동종상품 상용화 및 차세대 부품기업 구조전환
- 광역권소재 기업지원/연구기관 융·복합을 통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전기차용 소음제어시스템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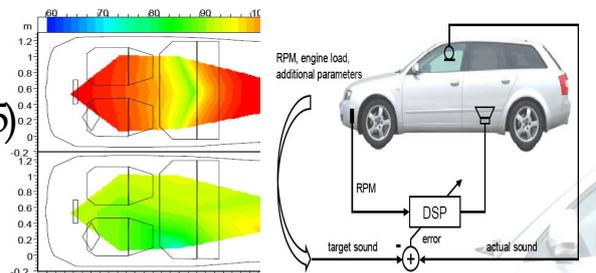
친환경 자동차의 소음저감에 따라 보행자 사고위험성 증가와 운전성능에 대한 감각 및 감성저하 문제점을 보완할 소음제어시스템 상용화기술 개발

필요성

- 기존개발 또는 진행중인 기술은 단순 재현기능 위주로 운전자 및 탑승자의 감성품질 극대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미래형 전기차 기술개발의 빠른 변화추세에 맞는 보행자 안전과 운행정보 등 내외부 음장을 적절히 재현할 시스템개발의 필요성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3(3년)
- 사업비 : 130억원(국비105, 지방25)
- 주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사업내용
 - 전기차용 소음제어시스템 개발 장비 구축(10종)
 - 전기차 소음제어시스템의 상용화 기술개발(R&D)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30	45	45	40
국비	105	35	35	35
지방비	25	10	10	5

향후계획

- 새로운 전기차 시장진입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비한 미래 자동차부품산업 기반 조기 구축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5
----------	----

제출일자 : 2010.10.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해

2014년 이전하는 도청 신청사를 경북의 역사, 문화,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명품청사로 건립하여 응도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 영천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경마와 승마 및 말 생산·육성, 인력양성 등 관련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 도 어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09.5.1) 함에 따라 현재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협소로 신청사를 건립하여 도내 수산어업 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소방학교 교육생들의 합숙시설 확충을 위해

부족한 합숙공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과후 교육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제2생활관 신축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안락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토지3건, 건물2건, 총 457,919백만원)

□ 토지취득 : 3건, 2,451,982m², 137,170백만원

□ 건물취득 : 2건, 126,445m², 320,749백만원

○ 도청·도의회 신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1번지 외 300필지
※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부지 내
- 면 적 : 부지 245,000m², 건축연면적 125,416m²
- 사업비 : 405,500백만원 (부지매입비 87,100 건축비 318,400)

○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 위 치 : 영천시 금호읍, 청통면 일원 1,149필지
- 면 적 : 2,185,648m² 중 투자금 해당지분(1/2정도)
- 사업비 : 50,000백만원 (부지매입비)
※ 영천시에 50,000백만원 지원, 전체부지 일괄보상 후
도 투입예산 비율만큼 취득 지분등기

○ 도 어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2, 954-13
- 면 적 : 건축연면적 1,029m²(지상3층)
- 사업비 : 2,349백만원 (국비 500, 도비 1,849)

○ 경북소방학교 제2생활관 신축 예정부지 매입

- 위 치 :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산177번지
- 면 적 : 21,334m²
- 사업비 : 70백만원 (부지매입비)

3.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 1건당 기준가격이...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는 2천제곱미터)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법개정에 따라 “예산의결”로 개정계획)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법개정에 따라 “예산의결”로 개정계획)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붙 임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2	2,430,648	137,100,000	1	21,334	70,000	3	2,451,982	137,170,000	
		건물 기타	1	125,416	318,400,000	1	1,029	2,349,000	2	126,445	320,749,000	
	1.매입	토지	2	2,430,648	137,100,000	1	21,334	70,000	3	2,451,982	137,170,000	
		건물 기타	1	125,416	318,400,000	1	1,029	2,349,000	2	126,445	320,749,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이	하		여	백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5건	2,578,427	457,919,000			
토지		3건	2,451,982	137,170,000			
건물		2건	126,445	320,749,000			
1 (토지)	전,답 대지 등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1번지 외 300필지	245,000	87,100,000	2011년 ~ 2014년	도청사 및 도의회청사 신축	부지매입
2 (건물)	"	"	125,416	318,400,000	2014년	"	청사건축
3 (토지)	전,답 대지 등	영천시 금호읍 대미리 20-2번지 외 1,148필지	2,185,648 중 투자금 해당지분 (1/2정도)	50,000,000	2011년	영천 경마공원 조성	부지매입
4 (건물)	잡종 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2, 954-13	1,029	2,349,000	2011년	도 어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청사건축
5 (토지)	임야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산177번지	21,334	70,000	2011년	소방학교 제2생활관 신축	부지매입

□ 결의안

-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 건설촉구 결의안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0. 10. 26.
제안자 :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1. 주 문

- “붙임 결의문”과 같음.

붙임 :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2. 제안이유

-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영남지역 1,350만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건의한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임.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년 3월 1단계 조사용역,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단계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 또한, 지난 7월 동남권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3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

- ## 3. 결의문 제출처 : 대통령실장, 국회의장(국토해양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토해양부장관

-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

결 의 문

영남권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우수 대기업유치 실패, 산업구조 개편 미흡,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이며, 최근 10여년간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투자가 서남해안권에 집중되면서 백두대간을 경계로 영남권이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영남지역 1,350만 지역민은 영남권 전체의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필수 기반시설인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갈망하여 왔다.

따라서 영남권 5개 시·도가 한목소리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러한 지역민의 여망에 힘입어 정부는 2007년 3월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1단계 용역을,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단계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영남권 주민 모두는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건설계획 발표만을 한결같이 학수고대해 왔다.

하지만, 입지선정을 앞두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5개 시·도 중 경북, 대구, 울산, 경남 4개 시·도는 접근성과 경제성 등이 뛰어나고 동남권 및 대경권 나아가 일부 호남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밀양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부산에서만 유독 가덕도 인근에 해상공항 설치가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가덕도가 아니면 김해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이기주의로 지역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2차 용

역이 완료되었음에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지난 7월 동남권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접근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 입지조건이 탁월한 밀양에 반드시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유치되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300만 경북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국 항공물류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영남권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연간 추가비용이 6천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공항건설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연내 입지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영남권 경제의 공동 상생을 위해 오로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공사비용 등이 가덕도 보다 뛰어나고 4개 시·도가 한결 같이 지지하고 있는 밀양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남권 5개 시·도의 주요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지는 밀양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업 조기 착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은 영남권 전체의 공동상생을 위하여 가덕도 유치와 김해 공항 확장 주장을 포기하고 밀양유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0. 10. 26.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2010. 11 인쇄 / 2010. 1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2

FAX : 602-5140

<비매품>